

중국경제 FOCUS

2002. 10.

산업자원부
대중국 투자·자원 협력반

목 차

□ 초 점	1
중국시장 수급불균형 갈수록 심화 / 3	
□ 투자·자원 정보	5
중국 서부지역 인프라 개발 현황 / 7	
중국 이전거래 탈세 집중조사 / 19	
2003년 중국경제 전망 및 현안문제 분석 / 20	
□ 전문가 논단	27
외국자본의 중국 국유기업 M&A / 29	
화교기업의 특징과 화교 네트워크 / 38	
□ 법규와 제도	77
세수징수관리법 실시세칙 / 79	
상표법 실시조례 / 103	

초 점

중국 수급불균형 갈수록 심화

주요 공산품 열 개 중 아홉이 공급과잉
차별화 전략으로 가격하락세 대비해야

KOTRA 해외조사팀

중국의 시장 수급불균형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중국국가경제무역위원회(경무위)가 최근 내놓은 올 하반기 주요 상품 수급동향 자료에 따르면, 총 600개 주요 조사대상 품목의 88%(528개)가 공급이 시장수요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룬 품목은 12%(72개)에 그쳤고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 품목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반기 공급초과 비율은 상반기(86.3%) 보다 1.7% 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산업별 공급초과와 수급균형의 비율은 농산품이 79.9:20.1, 공산품이 90.3:9.7로 나타나 농산품보다 공산품의 공급과잉이 보다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산품의 주요 품목별로는 방직품(12개 품목), 의류 및 신발(45개), 일용백화용품(71개), 가구(10개), 건축장식재(9개) 등은 전 품목이 공급초과 상태다. 필기구와 사무용품을 포함한 문화용품(94개 품목)과 칼러TV, VCD, DVD 등 가전제품(68개)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각각 84%와 92.6%의 높은 공급과잉률을 보였다.

이 처럼 공급과잉에 따른 수급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대내외 요인이 맞물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외적으로 세계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유효수요 부족에 따른 소비시장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중국은 자체 생산력 확대와 외국인 투자기업의 진출확대로 공급증가 요인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나 수요 측면의 호재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상품 공급과잉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공급과잉 시기에는 소비부진→물가하락→기업 채산성 악화구조가 우려되며 외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덤핑 조사도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돼 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 수출업체와 투자기업들은 ▶특색있는 제품개발 ▶신산업시장 선점
▶수출과 내수비중의 탄력적 조절 ▶시장세분화 등 차별화 위주의 마케팅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2002년 중국시장 주요 품목별 수급동향

품목분류	대상 품목수	공급>수요		공급=수요		공급<수요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대분류]							
공산품	466	415(89.1)	421(90.3)	51(10.9)	45(9.7)	0(0.0)	0(0.0)
농산품	134	103(76.9)	107(79.9)	31(23.1)	27(20.1)	0(0.0)	0(0.0)
[주요 품목군]							
방직품	12	12(100.0)	12(100.0)	0(0.0)	0(0.0)	0(0.0)	0(0.0)
견직품	26	25(96.2)	25(96.2)	1(3.8)	1(3.8)	0(0.0)	0(0.0)
의류. 신발	45	45(100.0)	45(100.0)	0(0.0)	0(0.0)	0(0.0)	0(0.0)
일용백화	71	71(100.0)	71(100.0)	0(0.0)	0(0.0)	0(0.0)	0(0.0)
문화용품	94	79(84.0)	79(84.0)	15(16.0)	15(16.0)	0(0.0)	0(0.0)
가전제품	68	63(92.6)	63(92.6)	5(7.4)	5(7.4)	0(0.0)	0(0.0)
가구	10	10(100.0)	10(100.0)	0(0.0)	0(0.0)	0(0.0)	0(0.0)
오금상품	24	24(100.0)	24(100.0)	0(0.0)	0(0.0)	0(0.0)	0(0.0)
교전상품	19	19(100.0)	19(100.0)	0(0.0)	0(0.0)	0(0.0)	0(0.0)
화공품	14	14(100.0)	14(100.0)	0(0.0)	0(0.0)	0(0.0)	0(0.0)
화학비료	12	12(100.0)	12(100.0)	0(0.0)	0(0.0)	0(0.0)	0(0.0)
화학농약	17	17(100.0)	17(100.0)	0(0.0)	0(0.0)	0(0.0)	0(0.0)
농업용필름	3	3(100.0)	3(100.0)	0(0.0)	0(0.0)	0(0.0)	0(0.0)
면.마 제품	7	7(100.0)	7(100.0)	0(0.0)	0(0.0)	0(0.0)	0(0.0)
토산품	17	17(100.0)	17(100.0)	0(0.0)	0(0.0)	0(0.0)	0(0.0)
축산품	6	6(100.0)	6(100.0)	0(0.0)	0(0.0)	0(0.0)	0(0.0)
일용잡화	25	25(100.0)	25(100.0)	0(0.0)	0(0.0)	0(0.0)	0(0.0)
취사기구	18	18(100.0)	18(100.0)	0(0.0)	0(0.0)	0(0.0)	0(0.0)
건축장식재	9	9(100.0)	9(100.0)	0(0.0)	0(0.0)	0(0.0)	0(0.0)
차(茶)	13	5(38.5)	5(38.5)	8(61.5)	8(61.5)	0(0.0)	0(0.0)
곡물. 식용유	17	7(41.2)	7(41.2)	10(58.8)	10(58.8)	0(0.0)	0(0.0)
부식류	43	24(55.8)	24(55.8)	19(44.2)	19(44.2)	0(0.0)	0(0.0)
건과. 과일	8	4(50.0)	100(100.0)	4(50.0)	0(0.0)	0(0.0)	0(0.0)
건채. 조미품	9	0(0.0)	0(0.0)	9(100.0)	9(100.0)	0(0.0)	0(0.0)
기타(철강류)	13	2(15.4)	8(61.5)	11(84.6)	5(38.5)	0(0.0)	0(0.0)

자료원 : 중국국가경제무역위원회(www.setc.gov.cn)

투자 · 자원 정보

중국 서부지역 인프라 개발 현황

KOTRA 청주 무역관

중국정부는 동부에 비해 낙후된 서부지역을 대상으로 50년 장기발전 계획을 세우고 지난 2000년부터 서부대개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시행 초기단계인 2000~2005년 동안에는 광대한 서부지역 경제발전의 중요 도약관 역할을 할 인프라, 즉 사회기초시설 건설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기본적인 경제활동 여건을 만들고 나서 산업별 발전을 추진한다는 장기적인 발전 전략이다.

금년으로 3년 째를 맞고 있는 서부대개발 정책은 정책 추진 전에 계획된 제9차 경제사회개발계획(1996~2000년)과 제10차 경제사회개발계획(2001~2005년)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나 현재는 이 계획들 중 서부관련 계획이 총체적인 서부대개발 계획에 통합돼 추진 중이다.

서부대개발 초기 단계인 인프라건설은 중국의 광대한 지역(4개 직할시, 22개 성, 5개 자치구) 및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본 고에서는 교통 및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상황을 간략히 알아보하고자 한다.

1. 교통 인프라

□ 도로망

- 기본목표 : 2005년까지 대도시와 중소도시간 기본적인 교통망 연결(라사, 우루무치 제외) 및 대외교역 확대를 위한 해상연결로 확보 등

변화가 가장 확실하게 눈에 띄는 분야로 각 지역별로 빠른 진행을 보이고 있다. 2001년 말 현재 서부지역의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는 총 연장 69.9만 km(고속도로의 경우 약 4,500 km)에 달했으며 서부지역의 도로건설 작업은 최근 들어 동부나 중부지역에 비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1998~

2001년 중국의 도로 증가추세를 보면 동부지역 18.5%, 중부지역 32.2 %인데 비해 서부지역은 50.9%로 서부지역의 도로망 건설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 중이다.

쓰촨성(四川省), 충칭(重慶) 및 구이저우성(貴州省) 등 서남부 지역의 교통망은 간수성(甘肅省), 신장(新疆) 등 서북부 지역에 비해 비교적 잘 정비돼 있다(서남부지역의 도로망은 총 42.8만 km로 서부전체의 61.3%를 차지하고 고속도로의 경우 3,114 km로 서부지역 고속도로망의 69% 점유함).

청두(城都), 시안(西安), 충칭(重慶), 쿤밍(昆明)등 주요 중심 도시들은 인근 주변 지역과의 연결을 위한 고속도로망을 확충하고 있으며 도시별로 3~6개의 도시간 연결 고속도로를 가지고 있다. 이들 도시들은 특히, 시내를 순환하는 외곽고속도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청두, 시안의 경우 이미 순환고속도로와 도시 내부 고속도로(三環路)가 완공된 상황이며 충칭과 쿤밍 등은 건설을 진행 중이다.

충칭시는 지난 해부터 '8시간 충칭'(8小時重慶)이란 슬로건 아래 도심 지역과 충칭의 농촌 지역을 8시간에 주파하도록 교통망 건설 계획을 내놓고 있다. 또 도시지역간에는 30분내에 주파한다는 목표 아래 도로 확장계획을 수립하고 대대적인 도로망 구축작업을 진행 중이다.

쓰촨성은 청두(城都) → 뎬양(綿陽)의 고속도로 망을 산시성 접경도시인 광위엔(廣遠)까지 연결을 추진 중이며 완공될 경우 쓰촨(청두) → 쓰촨(뎬양) → 쓰촨(광위엔) → 산시(漢中) → 산시(시안)로 연결되는 북부로와 쓰촨(청두) → 쓰촨(룽창,榮昌) → 쓰촨(루저우,瀘州) → 구이저우(구이양, 貴陽) → 광시(난닝, 南寧) → 베이하이(또는 팡청, 防城)항으로 연결되는 남부로가 연결된다. 현재 산시성과 쓰촨성 경계인 친링(秦嶺)산맥으로 광위엔-한중-시안간 도로공사가 원활하지 않아 주·간선망 구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러나 철로를 이용한 물자운송에 의존하던 서부지역 남북간 운송망이 육상운송망과 연결될 경우 서부전체의 경제발전에 상당한 활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충칭시가 추진중인 충칭- 후난(湖南)간 국도 확충 건설이 완공되면 청두 → 충칭 → 후난(湖南)을 잇는 서부와 중부지역간 연결로가 확충될 전망이다.

□ 해상 연결로

중국의 서부내륙지역은 비교적 변경무역이 발달한 윈난(雲南)이나 신장을 제외하면 전통적인 폐쇄적인 경제특성을 보여 왔으며 해상연결로가 부족하다는 점도 이에 대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해 오래 전부터 쓰촨, 충칭 등 내륙의 중심 도시에서는 육상교통망과 해상운송망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으며 현재 두 갈래의 주요 출해(出海) 통로가 형성돼 있다.

① 쓰촨(칭뚜) → 쓰촨(룽창) → 쓰촨(루쩌우) → 구이저우(구이양) → 廣西省(난닝) → 北海(또는 팡청)항

- 총 연장 1,709 km로 약 31억 달러를 투입, 15년간의 공사 끝에 지난해 12월 개통
- 고속도로 1,015 km, 준 고속도로 67km 및 국도 627km로 구성

② 충칭 → 구이저우(구이양) → 광시(난닝) → 광둥(잔장)

- 주요 해상연결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04년말 완공 예정
- 총 연장 1300 km이며 이 중 고속도로 905km(충칭 구간 134km)에 달함
- 베이하이항과 팡청항을 주로 이용하게 되며 위의 해상연결로는 구이저우(구이양)와 실질적으로 연결돼 있음

□ 철도망

- 기본목표 : 동서부간 연결 철로 건설 및 확장(시안 → 난징, 쿤밍 → 칭뚜 → 상하이), 전철 확장, 칭하이 - 라사간 철로 연결

중국 철도부(鐵道部)는 2001~2005년간 서부(西部)철도 건설에 1,270억 위안(약 19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 중 660억 위안은 서남부 지역에 투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철도부 관계자에 따르면 서부지역의 철도건설이 ‘10. 5 계획’(2001~2005년)의 중국철도 건설의 중점 대상이 될 것이며 2005년이 되면 서부지역의 철도망은 2.52만 km(서남부 지역 1.14만 km)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건설 중점 지역은 칭하이(靑海)성 시닝(西寧)과 시장(西藏) 라사의 구간 공사로 현재 건설을 추진중이며 수이닝(遼寧)-충칭(重慶), 용저우(永州)- 위린(玉林), 판야(汎亞)간 지역은 신규 철도건설을 계획 중이다.

베이징 → 시안 → 바오지 → 청뚜 → 판즈화 → 쿤밍을 잇는 철도가 서부지역 남북 물자 운송의 주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미 청뚜-쿤밍 구간은 전철이 완공된 상황이다. 서남부 내륙지역의 동남아 등 국외 수송 물량은 이 철도가 주요 연결채널로 한국, 일본 및 미주지역 물량은 청뚜-텐진-롄윈강-상하이 철도를 이용하고 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서부대개발 10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서북부 중심 도시인 산시성 시안-안후이성 허페이(合肥) 구간의 1,027 km에 이르는 철도를 건설 중이다. 완공될 경우 서북부 지역과 동부 지역간 철도 운송망이 확충돼 물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시안 → 허페이 → 난징 → 상하이). 이 외에도 서부대개발 10대 프로젝트의 하나인 충칭-후난성 화이화(懷化)간 640 km 철도가 수년간의 공사 끝에 금년 개통된 바 있다.

□ 항공망

- 기본목표 : 청뚜, 시안, 쿤밍, 우루무치 등 서부 중심도시의 공항 정비, 란쩌우, 충칭은 주요 공항 확대

광대한 면적으로 인해 서부지역간 항공운송의 발전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제선이 운영되는 주요 공항은 물론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지선 공항에 대한 확장 공사가 도처에서 진행되고 있다.

2005년까지 중국의 서남지역(쓰촨, 충칭, 윈난, 구이저우)의 공항이 34개에 달하고 2010년에는 40개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돼 서남부 지역의 교통상황이 앞으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 쓰촨성
 - 청두 쌍리우(雙流)공항 국내선 청사(2001년 완공)
 - 뎬양 공항 건설(2001년) 및 확대
 - 판즈화(攀枝花) 공항 건설 중
 - 지우자이꺼우(九寨溝) 공항 건설 예정
 - 광위엔(廣遠)공항 확장 등
- 충칭시 : 충칭 장베이(江北) 공항 확장 건설중(2003년말 완공)
- 산시성 : 시안 시엔양(咸陽)공항 확장 건설중(2002년 말 또는 2003 년 완공)
- 윈난성 : 린창(臨滄)공항 건설
- 간수성
 - 란저우 중촨(中川) 공항 확장
 - 둔황 공항 확장중
 - 자위관(嘉峪關)등 3개 지선 비행장 계획
- 칭하이성 : 시닝공항 제2기 공사 계획
- 구이저우 : 동런(銅仁大興)공항 확대 건설 중
- 신장
 - 우루무치 공항 확대 완공
 - 허티엔(和田)공항 확대 공사 진행 중

□ 해운 및 하천운송

○ 해운

서부지역의 주요 대외 운송은 철도를 통해 동부나 남부 항구의 운송항까지 운송하고 있다. 서부지역은 현재 기존의 동부 철도 노선 외에 남부 광시(廣西)지역을 통한 남부 운송로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관련 항구에 대한

확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서남부 최대 도시인 청두 및 충칭-남부항 구간 운송로 완공이 다가옴에 따라 육상 운송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주요 항구인 광청(防城), 친저우(欽州)항 및 베이하이(北海)항의 확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항구별 상황은 아래와 같다.

- 광청항 : 광시성(廣西省) 최대 항구로 주로 대규모 화물 운송을 맡고 있으며 접안선이 긴 것으로 유명하다. 26개 신규 부두 정박지가 완공돼 현재 1만톤급 이상의 선박 접안이 가능한 부두는 총 12개에 달한다. 물동량은 2001년의 경우 1,003만톤이었으나 2005년에는 1,850만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 친저우항 : 공업항구로 40km에 깊이의 접안선이 있으며 현재 7개 부두 정박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13만톤급 이상의 선박 접안이 가능한 부두 4개와 천연가스 등 연료보관을 위한 6개의 대형 창고를 보유하고 있다. 연간 물동량은 300만톤이다.
- 베이하이항 : 국내외 무역 운송서비스 상업항구로 컨테이너, 벌크 화물 운송 및 여객수송 부두 영업을 중심으로 한다. 현재 세계 98개국, 218개 항구와 무역교류를 하고 있다. 9개의 부두 정박지가 있고 2001년 물동량이 130만톤에 달하고 금년에는 280만톤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제3기 항구건설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완공되면 물동량은 445만톤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하천운송

양쯔강을 주축으로 한 하천은 중국 서부 내륙의 주요한 운송수단 중 하나로 운송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환경 개선계획에 따르면 2001~2005년 중 서부지역 수상운송망(水運) 개선을 위해 50억 위안을 투자할 예정이며 이를 기초로 20여 년에 걸쳐 내륙 하천운송(河運)과 해상운송망을 연결하고 항로를 정비할 예정이다.

서부지역의 내륙 하천 운송 길이는 전국 내륙 하천 운송 총 길이의 20%를 차지하며 현재 중국 중부, 동부 및 국외와 연결되는 기본 하천 운송망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통계에 따르면, 쓰촨, 윈난, 구이저우, 광시성, 충칭 등 5개 성시의 내륙 하천 운송 총 길이는 1.9만 km로 서부지역 전체 내륙 하천 운송 총 길이의 81.7%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 운송망 확충 및 개선을 위해 3급 항로 169km, 4급 항로 484km, 5급 항로 636km와 6급 항로 478km를 개선하고 부두 70개를 새로 신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화물 취급능력(705만톤)과 연간 이용자수(402만명)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삼협댐 공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04년말부터 3,000톤급 선박이 충칭까지 운행된다. 현재 충칭의 일반 항구 및 컨테이너 부두의 확대 정비 작업이 진행 중이며 양쯔강 최상류의 컨테이너 항구인 루저우는 정식 운영을 앞두고 있다.

2. 에너지 분야

□ 전력

가. 발전소 건설

각 성별로 수력발전(주로 서남부 지역), 화력발전소의 건설이 진행되고 있으며 상당수는 계획중이다. 발전소의 건설과 함께 전력송신망 개선을 위한 변전소의 건설 확장작업이 도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서부 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쓰촨, 윈난 경계의 얼탄(二灘)발전소는 330만 km의 발전용량으로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지만 현재 건설중인 윈난의 샤오완(小灣) 수력발전소(발전용량 420만 km, 2005년 완공예정)등은 얼탄발전소 규모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외에 대규모의 발전소 건설이 현재 진행중이거나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외 환경보호 및 농촌 경제에 맞는 소형 수력발전소의 건설들이 추진 단계에 있다. 주요 발전소 건설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윈난성 : 샤오완(小灣)수력발전소(설비용량 420만 km)건설 중(2005년 완공 예정), 따차오산(大朝山)수력발전소(135만 km)건설 중(2004년), 취징(曲靖)화력발전소 2기 확대공사(60만 km) 건설 중
- 산시성 : 한청(韓城) 제2화력발전소 건설 중 (240만 km)(2006년)
- 칭하이성 : 완공된 룡양시하(龍羊峽)수력발전소(128만 km), 리지아시하(李家峽)수력발전소(200만 km)외에 공보샤(公伯峽)수력발전소(150만 km)건설 중, 라시와(拉西瓦)수력발전소 건설 계획(372만 km)
- 구이저우성 : 판시엔(盤縣)(100만 km), 안순(安順)(120만 km)화력발전소 확대 건설중. 우강(烏江)유역에 9개 수력발전소 및 화력발전소 5기 건설예정
- 쓰촨성 : 진샤(金沙)강 유역에 시루어뚜(溪洛渡), 상지아빠(向家壩), 바이허탄(白鶴灘), 우동더(烏東德)등 수력발전소(총 3,670만 km규모) 건설 계획. 따뚜(大渡)강 유역의 푸뿌꺼우(瀑布溝)등 10개 발전소(총 1,206만 km규모), 야룽(雅礕)강 유역 8개 발전소(총 1,234만 km규모)건설 계획

나. 서부 전력의 동부 송전(西電東送)

중국정부는 서부대개발의 일환이자 중국 전체의 전력수급을 꺾한다는 계획하에 전력자원이 풍부한 서부지역의 전기를 개발하여 동부로 송전한다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현재 발전소 건설 및 송전망 구축에 주력하고 있으며 송전망은 기본적으로 남부, 중부, 북부 등 세가지 망으로 구성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1) 남부 송전망

구이저우(貴州)성의 우강(烏江), 윈난(雲南)성의 란창강(瀾滄江)과 광시(廣西)-윈난(雲南)-구이저우(貴州) 세 지역의 접경지인 난판강(南盤江), 베이판강(北盤江), 홍수이허(紅水河)의 수력발전자원 및 구이저우, 윈난 등 2개 성(省) 광산지역 화력발전소의 전기에너지를 개발해 광둥(廣東)지역으로 송전하는 전력망을 형성할 계획이다. 2000년 11월 구이저우 우강 유역 발전소 건설을 시작으로 3개 수력발전소, 2개 변전소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2) 중부 송전망

삼협과 진사강(金沙江)지류의 수력발전을 주로 화동지역(상하이, 장쑤, 저장 등)으로 송전하는 전력망 건설 공사이다. 지난 5월부터 이 송전망을 통해 쓰촨의 전력을 동부로 송전하기 시작했으며 삼협댐이 완공돼 발전(發電)을 시작하면 전력을 송전할 송전망 860 km가 형성(삼협-->후베이(湖北)우후(蕪湖)--안후이(安徽)-장쑤(江蘇))된다. 또한 삼협댐 발전소 발전기 1 기가 가동되면 바로 송전할 예정으로 송전량은 300만 kW에 달할 것으로 예상(현재 상하이 전력 사용총량의 30% 규모)된다.

3) 북부송전망

황하 상류의 수력발전과 산시(山西), 내이명구(內蒙古)광산지역의 화력발전을 베이징, 텐진, 탕산(唐山)지역으로 송전하는 전력망을 형성하고 있다. 기본적인 송전은 500 kV 송전선을 이용할 계획이다. 현재 산시 선터우(神斗), 내이명구 투오커투오(托克托), 허취(河曲), 다라터(達拉特) 등 4개 화력발전소의 확대 및 신규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상기 공사진행과 관련 진행중인 주요 송전망 형성 공사는 아래와 같다.

- 티엔성차오(天生橋)-광둥 간 제3차 500 kV 교류 송전선 공정
- 충칭(重慶)의 완현(萬縣)-삼협발전소 간 500 kV선로공사
- 윈난성 바오핑(寶峰)-루어핑(羅平)간 500 kV 교류 송전 선로 공정 등

□ 천연가스, 석유 등 수송망

가. 대륙횡단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공사(西氣東輸)

중국 서부는 천연가스 자원이 비교적 풍부한 지역으로 전국 천연가스 총 자원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신장(新疆)의 타림분지 지역이 중심 저장 지역으로 전국 천연가스 자원 총량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대륙횡단 파이프라인 공사를 통해 서부지역의 경제를 발달시키고 천연가스 수요가 많은 동부지역의 전체적인 산업구조와 에너지 구조를 조정하려는 목표하에 현재 공사가 추진중이다.

가스공급 주 파이프라인은 총 길이 4,200 km으로 신장 타림분지의 룬난(輪南)유전에서 시작하여 쿠얼러(庫爾勒), 간수(甘肅)성 우웨이(武威), 닝샤(寧夏) 자치구 간탕(甘塘), 산시성(陝西省) 징벤(靖邊), 산시성(山西省) 린펀(臨汾), 허난성(河南省) 정저우(鄭州), 안후이성(安徽省) 덩위엔(定遠), 장쑤성(江蘇省) 난징(南京)을 거쳐 최종적으로 상하이로 연결된다. 가스 수송규모는 연간 120억 m³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이프라인 건설 투자액만 400억 위안이 소요되는 등 총투자액은 1,400억 위안 이상 달할 전망이다.

1) 제1단계

쓰촨(四川), 충칭(重慶)의 가스유전에서 매년 30억 m³의 잉여가스를 우선 우한(武漢)으로 수송하고 우한에서 신양(信陽)까지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동시에 산시-간수-닝샤 접경 분지의 천연가스를 신양으로 수송하며 신양에서 다시 이 가스를 상하이로 재수송하는 수송망이다. 2002년에는 동 수송망의 수송능력이 40억 m³에 달하도록 할 계획이다.

2) 제2단계

차이다무(柴達木)분지의 천연가스를 란저우(蘭州)로 수송하고 란저우에서 시안(西安)까지 파이프라인을 설치하여 차이다무-산시-간수-닝샤 및 쓰촨-충칭 등 3대 가스유전을 양자강 중하류 지역의 가스 공급기지로 만든다. 2005년에는 80억 m³의 가스 수송능력을 갖추게 된다.

3) 제3단계

타림분지의 천연가스를 동부지역으로 수송토록 한다. 이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2007년에 이르면 양자강 중하류 지역으로의 가스 공급량이 140억 m³에 달하며 2010년에 이르면 190억 m³ 달하게 되어 향후 30여년간 안정적인 천연 가스 공급이 이루어지게 된다.

지난 7월 관련 프로젝트 기공식을 가졌다. 파이프라인 구축작업은 신장 룬난(輪南, 타림분지), 중간기지인 산시성의 옌촨(延川 黃土源), 장쑤성 우시(無錫) 및 최종도착지인 상하이 바이허진(百鶴鎮)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2005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나. 석유파이프라인

서부대개발 10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된 석유파이프라인 공사가 완공됐다. 북서부 지역의 풍부한 유전을 바탕으로 석유를 남서부 지역으로 운송하는 석유파이프라인 공사가 금년 완공되었으며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 파이프라인은 간수 란저우(蘭州)시 베이탄(北灘) 유류저장고에서 시작해 간수→산시→쓰촨→충칭 등 4개 지역을 거치는 총 1,250 km에 달하는 석유 수송 파이프라인으로 지난 98년 12월부터 40억 위안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했다.

3. 우리기업의 진출 방향

서부대개발과 관련된 인프라 공사는 상당수 진척되고 있으며 이에 못지 않게 더 많은 프로젝트가 계획 중이어서 관련 시장 진출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세부적이며 실질적인 조사와 접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서부대개발과 관련된 인프라공사는 정부, 산하 기구 및 국유기업 등 공사참여자가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인프라 공사의 경우 중국정부가 원활한 자본조달을 위해 외국기업이 투자-건설-운영하는 합작방식이나 BOT(건설-운영-소유권 이전)방식으로 참여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므로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거대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입찰과 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기업으로서는 현지에 인프라 공사를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현지 기업들과 연합해(또는 합자) 입찰자로서 공사에 참여하거나 이들과의 관계망 구축을 통해 하청자(또는 제품 공급자)로서 참여하는 방식이 보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입찰자 또는 하청업체로서 중국 인프라 공사를 담당했던 중국 기업들에 대한 조사와 접촉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시장 진출을 개척하는 방안에 대해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이전거래 탈세 집중조사

KOTRA 우한 무역관

중국정부가 지난 9월 7일 『세수징수관리법 실시세칙』(中華人民共和國 稅收征收管理法實施細則)을 개정, 공포하면서 외국인투자기업의 본·지점 가격이전을 통한 탈세적발에 전력투구할 것임을 시사해 중국 투자기업 세무관리에 주의가 요망된다.

또, 중국 국세국 및 지방세무국은 새로운 실시세칙에 따라 각 기업이 제출한 세무자료를 정밀검토한 후 탈세혐의가 있는 기업을 몇개 골라 집중적인 세무사찰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세무당국의 이러한 전략은 외국인투자기업이 41만개에 달해 현실적으로 이들 기업 자료를 모두 검토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이고 자칫 세무사찰이 외국인투자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는 것을 피하면서 일벌백계 효과를 거두기 위한 복안으로 분석된다. 실제 중국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 가운데 60% 정도가 결손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중국 세무당국은 상당수 기업이 탈세의도의 불성실 신고를 하는 것으로 보고있다. 또, 탈세에 대해 추징금 부과는 물론 형사처벌을 병행해 탈세에 따른 기회비용 자체를 증대시키는 것이 납세분위기 고취의 효과적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2003년 중국경제 전망 및 현안문제 분석

7.3~7.6% 경제성장 전망
디플레이션, 취업난 여전히 문제

KOTRA 베이징 무역관

금년 중국의 전반적인 거시경제는 7%이상의 안정적인 발전세를 유지했다. 상반기 GDP 성장률은 7.8%를 기록해 전년말 예상치를 넘는 좋은 성적을 나타냈다. 중국계획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은 <2003년 경제성장에 미치는 요인과 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경제성장을 전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발전 추세는 3/4분기에 도 이어져 금년도 전체 경제성장률은 7.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기추세를 감안하면 내년도도 고성장세를 유지해 7.3%에서 7.6%의 경제성장을 실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 내년도 중국경제 성장에 유리한 환경요인

▷ 16차 전인대 이후 정국안정

오는 11월 8일부터 16차 전인대가 개최돼 향후 중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될 예정이다. 중앙과 각 지방정부는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할 예정이며 이들은 적극적인 개혁정책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동안 세대교체 논의 등 다소 불안한 요소가 제거돼 안정적인 정국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적극적, 안정적 거시경제 정책 유지

현재 중국 경제의 현안문제는 유효수요의 부족과 통화긴축 압력이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 재정정책이라는 처방을 내놓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내년도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통화정책 위주로 한 거시경제 조절 운영체제를 유지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계획이다.

▷ WTO 가입에 따른 개방효과의 심화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개방이 확대로 외국의 對중국 신뢰도가 제고되고 있다. WTO 가입 첫해인 2002년의 경우, 1-9월간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683.75 억 달러(전년동기 대비 38.4% 증가; 신고기준)에 달하는 등 급속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러한 추세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투자매력도는 일정기간 지속돼 장기적으로 미국을 능가하는 FDI 최대 유치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중국의 수입장벽 완화 및 법제화 등 전반적인 경영환경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여 기업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인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고급 소비재 판매확대가 소비자 심리 자극

현재 전반적으로 소비침체가 완전히 회복되고 있지는 않지만 자동차, 여행 및 주택 등 새로운 소비대상을 중심으로 내수시장 확대에 대한 조심스런 낙관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일부 고급제품에 대한 소비 확대는 전체 소비의 확대와 소비구조 개선 그리고 더 나아가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내년도 중국경제 성장 제약 요인

▷ 고정자산 투자확대 한계

첫째, 최근 고정자산 투자 중 빠른 성장세를 보이던 부동산 개발투자가 완만한 속도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40%의 증가세를 보였던 부동산 투자는 현재 25%의 증가세로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관련 투자가 줄어드는 주된 이유는 부동산 투자의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통계국의 통계에 따르면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전국의 상품주택의 공실률이 전년동기대비 14.1% 증가해 13.2% 포인트의 증가폭을 보였다. 이 중 1년 이상 비어있는 상품주택의 면적은 4,397m²에 달해 전년동기대비 11.5% 증가했다. 금년 8월 상품주택 공실면적 분류지수가 98.42로 전년대비 6.80 증가했다. 1~8월간 상품주택 준공면적 증가는 판매면적보다 3.7%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상품주택의 공실면적은 계속 증가하고 있

으며 이러한 수급불균형으로 소비열기는 점차 식고 있다. 이 밖에 부동산 투자를 위한 자금원천의 대부분이 계약금과 은행대출로 이루어져 있으나 주택 판매감소와 연말대출만기에 따른 자금압박은 부동산 경기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고정자산 투자에 있어 인프라 건설은 대부분 국가예산에 의존하고 있다. 금년도 중국정부의 인프라 관련 자금투입은 62.1% 증가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이러한 증가가 내년도에는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재정수입 증가속도가 둔화로 재정적자 확대가 우려되고 있어 내년도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 국가예산에 있어 인프라 관련 예산증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인프라에 대한 정부지출 증가는 금년 대비 다소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기존 설비의 갱신 관련 투자의 확대도 낙관할 수 없다. 금년도 갱신 관련 투자의 침체는 주로 3차 산업, 특히 통신업 관련 기존설비 갱신투자의 하락을 꼽을 수 있으며 이는 금년도 통신업의 구조조정에 기인한다. 현재 통신업의 구조조정이 일단락 되었으나 향후 일정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통신업 갱신투자는 금년 투자 침체에 따른 회복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위의 요인을 감안할 때 내년도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는 소폭 하락세를 보여 전체 국유 및 기타 고정자산투자 증가는 15%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 통화긴축 및 디플레이션 상태 지속

통화긴축과 유효수요 부족은 장기적으로 중국경제 발전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9월이래 소비자물가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금년도 GDP가 1/4분기 7.6% 증가, 2/4분기 8% 증가하였으나 소비자 물가지수는 각각 0.6%, 1.1% 하락했다. 금년 7, 8월 전반적인 경기지수는 강세를 보였으나 물가지수의 하락세를 억제하지 못하여 각각 -0.9%와 -0.7%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생산재 가격지수, 소매가격지수와 공산품 출하지수 또한 크게 하락했으며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국이 고민하고 있는 통화긴축 문제는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모순에 따른 장기적인 문제로 심화되고 있다. 즉, 전세계적인 과잉공급과 중국의 세계의 공장으로서 부상되어 수급상태가 호전되고 있지 않으며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이러한 문제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을 감안하면 내년도 중국의 물가성장률은 0% 또는 소폭의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물가성장률이 중국 경기의 침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중국의 경제성장률에 따른 구조적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의 실업문제는 내년도에도 지속될 것이며 경기성장률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 전세계 경기회복 전망 불확실, 수출 다소 감소 우려

금년도 전세계 경기는 상승과 하락의 반복세를 보였다. 미국 경제는 1/4분기 5.0%에서 2/4분기 1.1%의 하락세를 보였으며 이에 IMF는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당초보다 낮은 2.2%로 조정하였다. 미국경기의 double dip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아직까지 상존하고 있으며 언론사 회계부정사건 및 이라크 전쟁 가능성으로 향후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유럽경제는 장기적인 실업문제 등 구조적인 문제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유로화의 사용에 따라 적극적 재정정책을 사용할 수 없는 유럽의 각국은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운용이 쉽지 않으며 통화정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일본 역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권이 보유한 대량의 불량채권과 증시침체로 경기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선진국의 부진속에서 아시아 각국의 약진이 돋보이고 있다. ADB가 발표한 <2002년 아시아 발전전망>에 따르면 금년 아시아 경제성장률은 작년의 3.7%에서 4.8%로 증가할 것이며 내년도는 5.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각국 경기의 불투명으로 중국의 대외 수출은 다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 각국과 중국 내수시장 경기는 현재 수준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 등 선진국 경기 불확실로 중국의 내년도 대외수출 증가는 다소 하락해 10% 정도의 증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 중국정부의 거시경제정책 기본 방향

내년도 중국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은 금년과 비교해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중국경제 운용의 기본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적극적 재정정책 지속 실시, 투자방향 조절

중국정부는 재정적자의 위험을 고려하며 안정적 재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 운용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사회보장과 농촌교육, 인프라 확대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사회보장자금의 지출 관련 혜택수준을 제고하고 사회보장제도개혁을 가속화해 매년 일정규모의 사회보장채권을 향후 10년간 발행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성급 지방정부의 농촌 인프라와 교육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중서부 및 지방의 도로관련 투자를 늘릴 예정이다. 교육관련 투자지출을 증가하여 농촌지역의 9년 의무교육을 보급하고 향후 무료교육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농촌의 생태환경건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서부지역의 삼림녹화사업에 역점을 둘 것이다.

▷ 적극적 통화정책의 효과 제고

내년도 중국의 재정정책은 상술한 바와 같이 재정책대의 한계를 받기 때문에 적절한 화폐정책을 통하여 보완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술적인 화폐정책에는 한계가 있는 바, 금융시스템의 개혁 등 적극적인 화폐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소비대출의 영역을 확대 등 유동성의 확대와 중소기업의 업무조정과 활성화 등 자본시장 재편을 통한 화폐정책을 통하여 재정정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 통화긴축 완화

통화긴축은 현재 중국이 당면한 주요 문제 중 하나로 단기간내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낙후된 생산설비와 비효율적인 공급을 억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유효한 화폐정책을 통해 통화긴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실업유형별 대책 마련 및 취업확대

실업률 또한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당면한 주요 현안문제로 여러가지 실업유형중 구조적 실업과 마찰적 실업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실업의 유형을 나누어 이에 맞는 처방을 내놓을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사회보장 제도의 완비, 실업인구의 재교육, 비효율적인 실업혜택 감소를 추진하며 경기적 실업에 대해서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하여 실업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자료원 : 國家計劃委員會 經濟研究員 經濟形勢分析課題組

전문가 논단

외국자본의 중국 국유기업 M&A

자료원: 중국경제신식망(中國經濟信息網)

중국경제 부상에 따라 M&A 등의 방식을 통한 다국적 기업들의 중국진출이 '90년대 중반 이후 활발히 전개중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경쟁체제에 직면한 일부 국유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소유권을 일부 양도하거나 외국자본과의 합자·합작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본고는 독일 BSH(Bosch und Siemens Hauesherate)사의 안후이성(安徽省) 양쯔냉장고(揚子電冰箱) 공장 인수과정 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단, 본고의 내용은 위의 두 기업에서 공개한 자료나 직접 실사 등을 토대로 하며 해당 지역에서 이미 공개되었거나 혹은 공개 가능한 것으로 특정기업의 사업비밀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밝힌다.

□ 개요

중국의 냉장고 시장은 2002년도 생산량이 약 1,500만대로 기술 수준이나 품질면에서 어느 정도 국제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연간 생산량의 20% 이상이 유럽이나 미국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현재 경쟁에서 생존한 하이얼(海爾), 커룽(科龍) 및 메이링(美菱) 등 소수의 대기업들이 냉장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처럼 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몇몇 기업들은 대부분이 이전에는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소규모 공장에서 출발한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안휘(安徽)성 추저우(滁州)에 위치한 양쯔냉장고(揚子電冰箱)도 이 지방의 영세 철강공장에서 시작했다. '80년대 중반 양쯔전기공사(揚子電氣公司) 설립자인 쉐중광(宣中光)이 공장을 인수하고 이탈리아로 부터 아리스톤 생산라인을 구입 및 지방의 사영(私營) 기계공장을 인수함으로써 기술, 자원 및 세수면에서 혜택을 받았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양쯔공사(揚子公司)는 중국 냉장고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됐다.

'90년대 이후, 양쯔공사의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1995년도 냉장고 생산량이 60만대에 이르면서 업계의 5위로 부상했다. 한편, 상품 다원화 정책에 따라 냉장고 이외에도 대형트럭, 버스, 에어컨 및 욕조 생산에도 막대한 자본을 투자했으나 판매이익을 R&D에 투자하기 보다는 신규사업에 확장에 투자해 결국 이러한 급속한 확대 전략이 양쯔사에 발전의 걸림돌이 됐다.

또, 국유기업 예산에 대한 정부 규제가 악화되면서 양쯔사는 은행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차입해 회사의 재무 구조가 악화되고 여전히 국유기업적인 관리체제와 저(低) 생산성 등 전형적인 국유기업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대한 타계책으로 양쯔사는 경영범위 축소 등 전략 수정을 시도했으며 회사 경영진은 냉장고 시장에서의 업체간 경쟁이 극도로 치열하므로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즈음 독일 BSH주식회사(博西華股份有限公司)는 합자 파트너를 찾고 있었던 시기였으므로 양측의 합병이 초기에는 의견일치를 보였다.

□ 합병상의 문제점

독일 BSH사는 독일 지멘스(Siemens)사와 보쉬(Bosch)사 연합으로 이루어진 세계 4대 가전 생산 다국적기업으로 유럽시장에서는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 회사는 '70년대부터 유럽에 공장을 설립하고 '90년대 이후로는 세계화 전략에 따라 중국을 아시아 시장을 공략기지로 선정하고 중국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BSH사는 경쟁력 있는 현지의 생산 공장과 합병이 중국시장 진출의 지름길이라고 인식하고 세탁기 생산공장은 우시(無錫)의 샤오텐어(小天鵝)에, 냉장고 생산공장은 양쯔(揚子)에, 그리고 샤오텐어와 양쯔의 2시간 거리에 있는 난징(南京)에 중국 본부를 설립할 계획이었다. 이러한 BSH사의 전략은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으나 양쯔와의 협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질적인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 지분율

BSH사는 신규 설립회사의 다수지분 확보를 원했다. 협상 초기에는 양쯔사도 다소 망설이는 분위기였으나 결국 BSH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BSH-양쯔간 지분율이 7:3으로 정해졌다.

2. 매입가격

BSH측은 양쯔 냉장고 공장의 고정자산 중 토지사용권과 공장 부대시설외에는 대부분 무용지물이라고 보았는데 양쯔사가 보유하고 있던 기계들은 독일의 기술기준에 크게 못 미쳤다. BSH측이 원했던 부분은 판매망, 상표 및 기술특허 등 무형자산이었으며 중국측이 무리한 가격을 요구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양쯔측은 자사의 설비가 우수하며 무형자산도 중국내의 권위 있는 특허기관의 평가를 받았으므로 시세에 맞지 않는 가격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3. 합병 심사비준(審批)

BSH측이 중국진출 방식으로 인수합병을 선택한 이유는 시장 개척에 드는 시간을 줄여보자는 의도였다. 지방정부에서 외국계 투자기업의 심사비준이 가능한 경우는 투자액이 3,000만 달러 이하에만 가능하고 그 이상인 경우 중앙 유관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BSH측과 양쯔측의 투자 규모는 3,000만 달러 이상으로 상급 기관에 보고할 경우 '90년대 중반인 당시로서는 국유기업이 외국자본에 합병되고 외국인이 다수지분을 갖는 등의 문제가 비교적 민감한 사안이었다. 그렇다고 상급 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지방에서 단독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지방정부의 묵인과 협조가 필요하므로 양쯔측에서는 이런 점들을 이용해 고자세로 협상에 임할 수 있었다.

□ 양쯔-BSH 합병관련 최종합의 내용

- 회사명 : BSY제냉유한공사(博西揚(BSY)制冷有限公司)
- 설립년도 : 1996년 3월
- 출자규모
 - BSH사 : 8,225만달러(현금출자)
 - 양쯔사 : 3,225만달러(현물 및 기술출자)
- 합자회사 생산능력 : 연간 120만대

○ 지분율

- BSH사 : 양쯔사 = 7 : 3

○ 이사회 구성

- BSH사 : 이사 7인, 사장 선임권 보유
- 양쯔사 : 이사장 등 이사 3인

○ 기타

- 투자액이 1만 달러를 상회해 지방정부 선에서 심사비준을 완료하기 위해 명의상 동시에 4개회사를 설립(각 회사의 투자규모는 2,900만 달러 선임)

절대주주인 BSH사에 의해 독일식 기준에 기초한 체제 개혁이 진행됐고 양쯔사 소유였던 대량 설비들은 대부분 철거됐다. 또, 외국측이 관리직의 대부분을 점하면서 기존의 양쯔사 중견간부에 대한 소위 물갈이가 진행됐다. 독일측의 이러한 방식은 양쯔측의 강경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고 이사회 내부에서도 양측의 관계가 악화됐으나 최종 결론은 다수 지분을 소유한 BSH에 의해 결정됐다.

□ 중국시장 진출 전략 수정

BSY사에 대규모 자본이 유입될 즈음 중국 시장환경에 변화가 발생했다. 1996년 이후, 경기가 둔화되면서 중국 가전시장도 위축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환경 변화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양쯔사의 판매망을 BSH사가 관리하면서 약화되기 시작한 점이었다. 이에 따라, 연평균 냉장고 판매량이 20~30만대 수준까지 하락했다. 1998년, BSY사는 회사의 판매실적과 이윤이 모두 목표치를 미달하고 BSH-양쯔간 갈등 뿐만 아니라 BSY사-지방정부간 의견 충돌도 발생하는 등 회사 경영에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됐다. 이에 대한 타계책으로 BSH 본사에서는 중국시장 전략을 아래와 같이 수정했다.

1. 우선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 당초 설립한 4개사를 안후이 BSY 제냉유한공사(安徽BSY制冷有限公司)에 합병한다.

2.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 도시주민 25%만을 주요 소비자로 인식하고 이와 상응하게 회사 규모를 축소한다.
3. BSH본사는 중국 공급상을 서구 기술보다 더 도움이 되는 존재로 시장의 주요 경쟁상대로 인식한다.

1999년 초, 독일 BSH 본사는 장기적으로 연평균 120만대 생산이라는 목표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으며 중국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산능력을 약 40만대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 양쯔사의 퇴출

당시 양쯔측은 기본적으로 BSY사에서 이미 소외된 세력이었다. 독일측이 다수지분을 차지하고 지분율에 상응하는 대규모 손실도 떠안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양쯔사의 입지는 더욱 약화됐다. 1998년 9월, 중국투자은행(中國投資銀行)은 자기 은행을 수익자로 하는 자산보전을 양쯔사에 요구하며 BSY사의 양쯔측의 BSY사 주식을 모두 동결했다. 이후, 광따은행(光大銀行)이 중국투자은행으로부터 양자측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이양받으면서 은행들은 주식이 하락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었다. 정부와 법원의 관리하에 양쯔측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30%의 주식 가격을 책정, BSH측에 양도하고 양도금액으로 은행 채무를 변제했다.

2000년 6월, 양측 합의하에 양쯔측은 4년후에 3,525만달러에 상당하는 가치의 주식을 995만달러에 독일측에 전부 양도했다. 이로써 양쯔사는 BSY사로부터 완전히 철수하며 독자기업(獨資企業)이 된 BSY사는 안휘BSH제냉유한공사(安徽博西華(BSH)制冷有限公司)로 개명한다. 2001년, 회사의 경영실적이 호전되면서 연간 생산량이 40만대를 넘어서고 흑자 경영을 실현했다.

□ 분석

독일 BSH사의 양쯔사에 대한 다수지분 확보에서 독자기업 성립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외국자본에 의한 중국기업 인수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볼 수 있다.

1. 중국투자 외국자본의 합병 전략

외국자본이 중국기업을 합병하는 주된 이유는 단기간내에 시장점유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며 이러한 확대전략은 중국기업에 대한 맹목적인 인수합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BSH 본사가 당초에 중국시장에 대한 시각이나 양쯔측과의 합작 등은 상당히 맹목적인 면이 많았다는 의견이 있다. 1999년 생산규모를 대폭 축소할 일이나 수입한 냉장고 포장설비를 다시 독일에 있는 BSH사의 생산기지로 돌려보낸 것 등은 지나치게 독단적이었다는 시각이 있다.

2. 정보의 부정확성

인수합병은 일반적으로 비공개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BSH사의 양쯔사 합병시 접한 부정확한 여러 정보들이 인수합병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90년대 중반, 양쯔사의 대외신용도나 브랜드 인지도 및 판매망 등은 어느정도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이러한 무형자산들은 모두 단기간에 막대한 금액을 광고에 투자하거나 원가계산이 어려운 매출차입금이 누적돼 형성된 것으로 정확한 가치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독일측이 양쯔사를 합병대상으로 선택했다는 자체가 생각이 부족했고 합병과정 중의 가격협상 역시 한계가 있는 일이었다.

양쯔사 합병후 BSH사는 당초 판단했던 것과 양자의 실제 상황간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양쯔-BSH간 협상중 양쯔사는 합법적이지만 교묘하게 자사 규모를 부풀린 사실이 있으나 중국의 회계기관과 후에 개입된 외국 회계사무소 모두 양쯔사의 자산현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자산의 가치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그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자산가치가 달라진다. 양쯔사는 중소 도시까지 영향력이 있는 전국적인 판매망을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가치가 떨어진다고는 볼 수 없으나 판매망이 대부분 개인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이 유통망은 양쯔사의 통제하에서만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BSH사가 회사 전체를 인수했으나 양쯔사 내부인에 의해 통제되던 판매망까지 소유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다. 독일측은 합병 후 판매조직을 기존의

양쯔측 판매원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남경에 구축하고 어음보다는 현금결제를 고수했으나 이러한 방식은 당시 중국 냉장고시장에서 통용되던 상관습과는 맞지 않았다. 그 결과, 다수의 판매상들이 기 확보한 고객들을 데리고 경쟁사로 옮기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판매망이 점차 와해되기 시작했다.

3. 합병 파트너간 문화적 차이

양쯔사와 합병후 양사간 문화적 차이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BSH사 출신 관리 계층은 대체적으로 교양을 갖춘 사람들로 그들은 직원간 관계를 명확히 하고 회사의 체제부터 정관까지 모든 독일기업이 그러하듯이 판매 박은 듯이 엄격하게 처리했다. 그에 비해 양쯔측의 핵심 관리층은 대부분이 공장 노동자 출신으로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외에도 양쯔사의 발전은 어느 한순간 폭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관리체계가 허술한 반면 관리층의 자존심은 대단했다. 독일측은 기존 관리층에 대해 크게 간섭할 의도가 아니었으나 후에 개혁없이 생존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서 양쯔측 관리층에 대한 간섭이 불가피했다.

양쯔-BSH간 합병이 실패로 끝나면서 양사 합병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이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다.

○ 상표

BSH사가 ‘메이지아징’(美加淨)과 같은 양쯔사 상표를 소수의 냉장고에만 사용했고 결국에는 브랜드가 소멸했다. 그러나 BSH사는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메인 브랜드(main brand)와 지역 브랜드(regional brand)를 구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독일측이 양자의 상표를 고의적으로 소멸시킬 이유가 없었고 BSH사가 경계할 만큼 양쯔사의 브랜드 가치가 높지 않았다.

○ 적자상황

일부에서는 BSH측이 합병 초기에 전략적으로 적자를 유도했다는 의견이 있다. 적자후 증자를 시도했고 투자능력이 없는 양쯔측을 BSY사에서 축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국적기업 본사에서는 해외투자 리스크를

상당히 고려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증자하는 경향을 보인다¹⁾. BSH사가 지배주주인 상황에서 고의로 적자를 내면서까지 양쯔를 몰아낼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이전가격

독일측이 인수한 후 양자측이 보유하던 대규모 생산라인은 철거됐고 2000년 1월까지 설비 수입금액(누계기준)이 1,600만 달러에 달했다. 설비의 대부분은 독일, 이태리, 덴마크 등지에서 수입돼 수입과정은 BSH에 의해 통제됐고 이러한 점이 양쯔사의 의심을 샀다. 확인할 방법은 없으나 수입과정 중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 인수합병에 대한 지방 정부의 의견

상술한 인수합병사례를 통해 지방정부가 인수합병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국적기업 관련 인수합병에 있어서 지방 정부의 조치는 효과적이지 못했다.

인수합병 초기, 지방정부는 하나의 회사를 네개로 분할 등록하는 것을 묵인하고 양쯔사가 전체지분을 양도할 때 BSH사가 조건없이 대외경제무역위원회와 공상행정관리국으로부터 외자기업 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보증했다. 이처럼 지방정부는 국유자산 매각을 방조했다는 책임감보다는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해 실질적 손해를 막고자하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합병 후 안정적인 세원확보와 수세와 고용창출 기회가 확대돼 지방 경제가 활성화되는 쪽을 원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BSH사의 설립 초기, 독일측은 지방정부와의 관계가 그다지 원만하지 않았다. 그들은 곳곳에서 ‘판시’를 강조하는 것은 시장제도가 불완전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중국 법률과 법규에 의거해 처리하도록 하고 규정상 명시되지 않은 것들은 모두 무시해 버렸다. 그러나, 곧 독일측도 지방정부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면서 지방 정부와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개최하는 각종 회의에 참석하거나 관련기관에 자사의 상황을 알리는 자료를 보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는 등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양쯔보다 BSH사가 훨씬 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업이었다.

1) Vernon, 1994.

4. 두 기업간의 인수합병에 대한 평가

비록 BSH사가 결국에는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하게 됐으나 기업간 인수합병이 실패한 것은 분명하다. 독일측도 인수합병을 통해 당초 기대했던 것 중에서는 제대로 얻은 것이 없으며 중국내에서 BSH의 입지를 구축했다고는 하나 그 또한 양쯔측과는 관계없이 이루어졌다.

자료에 따르면, 양쯔사측은 손실이 심각해 1996년 합병 이후 2000년 전체 주식 매각 때까지 주가가격만으로도 약 2,000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

화교기업의 특징과 화교 네트워크2)

서울대 국제지역원 정영록 교수

I. 화교의 현황

1. 화교의 정의와 발생 배경

1) 화교의 정의

- 화교(華僑)는 중국 이외의 나라에 거주하는 중국계 민족을 광범위한 의미에서 일컫는 말로 그 동안 중국계 혈통에 대하여 華僑 외에 華人, 華商, 華裔 등으로 세분화되어 약간의 의미상의 차이를 두고 사용됨
- 화교(華僑)는 19세기말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가장 보편적인 용어로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계 민족을 통칭하였으나, 거주국에서 현지인과 동화하여 중국의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현재는 보다 엄격한 의미에서 국외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자만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범위가 축소
- 화인(華人)은 중국인과 화교를 포괄하는 개념이 원래의 의미이지만 많은 경우 국외에 거주하면서 중국 국적을 포기하고 거주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계를 통칭
- 화인(華裔)은 중국계 혹은 화교의 자손으로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한 중국계를 의미
- 화상(華商)은 화교는 물론이고 화인 가운데 자영업에 종사하는 중국계 상인을 의미

2) 이 자료는 2002년 10월 16일 개최된 산업자원부 대중국 투자·자원 협력반 세미나 주제 발표 자료임.

- 그러나 이들 개념은 華僑와 華人 간의 구분의 모호, 국적 확인의 어려움, 이중 국적자 문제, 통계상의 구분 불가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구분이 불가
-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해외거주 중국계 민족을 현지 국적 취득과 상관없이 포괄적인 의미에서 華僑로 통일하여 사용.

2) 화교의 발생 배경

(1) 화교의 이주과정

- 중국인 해외이주의 역사는 南宋시기부터로 추정되는바, 그 특성에 따라 시기 구분이 가능
- 이민의 규모가 처음으로 갖추어지던 시기(12C초-17C초)
 - 송 멸망 후 대규모 遺臣이 南洋지역으로 피난한 것과 명나라 鄭和의 7차례 大航海의 영향으로 남양지역으로의 이민자가 증가
 - 1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해외 이주자들은 남양 각지에서 생존 등의 이유로 함께 집중 거주함으로써 중국민족의 독특한 특색을 가진 화교 사회를 형성
- 이민자가 크게 증가하고 분포범위도 확대된 시기(17C 중엽-1940년대)
 - 1644년 淸朝가 明을 멸한 후 많은 遺民들이 대만으로 건너가 鄭成功과 함께 反淸復明의 투쟁에 참가하였고 그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남양지역으로 이주
 - 아편전쟁 후 서구 열강이 청조로 하여금 중국인의 出國을 합법화시킨 뒤 흑인노예무역의 종식에 따른 부족한 노동력을 중국으로부터 공급
 - 제1차 세계대전과 10월 혁명으로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부족한 국내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모집한 중국노동자들이 戰後 유럽 각지에 定住

- 화교사회가 발전하여 일정한 규모를 갖춘 ‘唐人街’·‘中國城’과 同鄉·同族결합으로 이루어진 화교조직이 출현함에 따라 後發 이민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
- 이민 숫자가 감소하고 이민 대상지역도 변화한 시기(1940년대~1970년대)
 -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중국정부가 해외이민을 장려하지 않고 해외의 화교로 하여금 거주국 국적을 취하도록 장려
 - 戰後 동서냉전 국면 하에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가들이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
 - 전후 독립한 동남아 국가들이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排華정책을 제정함으로써 적지 않은 화교들이 유럽이나 미국으로 이주
 - 중국 대륙의 지식인과 동남아 등지의 화교들이 과학 기술이 발달되고 선진 실험설비를 갖춘 서방국가로 이주
 - 특히 홍콩이나 동남아 등지에 살던 화교들이 경제가 발달하고 사회가 안정된 구미나 호주 등지로 再移住하는 추세³⁾
- 이민자의 수가 다시 증가하는 한편 해외화교들이 계속해서 구미와 호주 등지로 재이주하는 시기(1970년대~현재)
 - 1970년대 말 이래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실행하면서 세계 각국과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많은 대륙 사람들이 相續과 혼인 및 유학 등을 통해 국외로 이주
 - 베트남 전쟁과 공산화로 이 지역 화교들이 구미 등지로 피난
 - 60년대 중반 이후 미국과 캐나다가 신 이민법 제정을 통해 국가별 신규 이민 허용 범위를 확대하면서 대만, 홍콩, 동남아 등지의 화교들이 미주지역으로 재이민

3) 예를 들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5000명이 안되었던 영국의 화교 수가 홍콩과 영연방에 살던 화교가 이주하면서 1965년에는 약 5만 명으로 증가

- 그 결과 1948년 21만 명에 불과하였던 미주지역 화교 인구는 1988년 471만 명으로 늘어나 연평균 6.4%의 인구 증가율을 기록
- 80년대 호주, 뉴질랜드 등도 아시아와의 경제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화교 이민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고, 특히 홍콩 반환과 맞물리면서 대규모의 홍콩인들이 대양주로 이민
- 동서냉전의 종식으로 각국 이민의 자유로운 流動이 가능
- 1979년이래 미국에 이주한 80만 명의 인도차이나 난민 가운데 40만 명이 화교이며,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5만 여명의 화교 중 절반이 1966년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이주한 사람이라는 통계는 이 시기의 특징을 대변⁴⁾

(2) 화교의 해외 이주의 배경

- 첫째, 중국의 내란이나 왕조교체기에 대거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
 - 진시황이 국가를 통일하여 다민족적 중앙집권제의 봉건국가를 건설하였지만 분서갱유로 상징되는 폭정은 화교사의 초창기로 작용
 - 晋, 唐의 대혼란 시대에 많은 화교·화인들이 생성되었고, 너무 많은 인구로 다수가 생활고에 직면하면서 이주
 - 宋이 元朝에 멸망된 후 宋의 遺民들이 南洋으로 피난하였던 것이나, 滿洲族 入關 이후 明의 遺臣들이 피난하였던 것이나, 太平天國과 民國初年 내전시기 발생한 이민 및 新中國 성립 후 國民黨人의 해외 이주 등의 사례
 - 1989년 천안문사건 당시에 다수의 문화인 및 민주화운동권들이 망명하여 구미 선진국의 화교인구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
- 둘째, 토지점병과 가혹한 세금 및 각종 착취와 인구과잉으로 인해 해외로 나가는 경우

4) 陶潔, 앞의 글, pp.48~51.

- 1661~1812년 사이 福建의 인구가 5배 증가한데 비해 경작면적은 단지 32%만 증가했고, 廣東의 인구는 20배나 증가한데 비해 경작면적은 27% 증가에 그치면서 많은 流民이 발생했고, 그 중 상당수는 臺灣과 南洋 등지로 이주
- 셋째, 서구열강의 침략과 식민지 확장으로 인한 경우
 - 아편전쟁 이후 서구의 식민지 경영과 중국의 자급자족 경제 붕괴로 상당수 농민, 노동자와 수공업자들이 이민과 인신매매의 형태로 해외 이주
- 넷째, 이민 대상국의 이민정책 변화에 따른 경우
 - 1862년 미국이 서부개발을 위해 대륙횡단철도를 부설하면서 대량의 ‘華工’(중국인 노동자)을 수용했으나 20년 뒤 중국인의 이민을 제한하는 ‘排華法案’(Chinese Exclusion Act of 1882; 1943년 폐지)이 통과됨으로써 10년간 중국노동자의 미국 입국이 금지. 그러나 1960년대부터 중국인 입국 제한이 완화되어 7,80년대 많은 세계 각지의 중국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하는 계기 형성. 마찬가지로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호주, 캐나다 등의 이민정책 변화도 모두 중국인의 이민에 영향⁵⁾
- 다섯째, 중국인은 조국애보다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하여 보다 살기 좋은 나라를 추구하는 민족심리가 내재
- 여섯째, 최근의 현상으로서 유능한 중국인을 유치하려는 상대국의 인재확보 전략

2. 분포 현황

- 1998년 기준 중국을 비롯한 화인 국가와 화교들의 인구수는 13억 793만 명으로 전 세계인구의 22.4%
- 이 중 화인국가를 제외한 화교인구는 3,581만 명이며 아직도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지역 인구 비중이 80%로 절대 다수를 점유

5) 陶潔, 「中國海外移民史略」, 『華人經濟年鑑』, pp.45~48.

- 그 외, 미주지역이 13.2%, 유럽지역에 5.5%, 대양주지역에 1.4%가 분포
-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8년 기준 전 세계에서 100인 이상 화교들이 거주하는 국가는 98개이며, 이중 만 명 이상 국가는 52개, 10만 명 이상 국가는 25개(아시아 13개, 유럽 5개, 미주 5개, 대양주 2개)
- 구체적으로 화교 인구 규모와 인구 비중 순서로 20대 국가에 해당하는 국가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음

<화교인구 규모 순, 인구 비중 순 20대 국가>

(단위: 천명, %)

순위	국가(화교인구)	국가(인구 비중)
1	인도네시아(7,310)	싱가포르(77.9)
2	타이(6,358)	말레이시아(26.3)
3	말레이시아(5,520)	브루나이(14.7)
4	미얀마(3,000)	타이(10.2)
5	미국(2,730)	수리남(9.2)
6	싱가포르(2,680)	프랑스령 폴리네시아(8.8)
7	필리핀(1,030)	미얀마(6.4)
8	베트남(1,000)	파나마(4.4)
9	러시아(1,000)	레위니옹(3.7)
10	캐나다(920)	나우루(3.6)
11	페루(500)	인도네시아(3.6)
12	터키(400)	라오스(3.1)
13	오스트레일리아(372)	캐나다(3.1)
14	캄보디아(300)	뉴질랜드(3.0)
15	사우디아라비아(270)	캄보디아(2.9)
16	영국(250)	앤티리스(2.8)
17	일본(243)	모리셔스(2.6)
18	프랑스(225)	팔라우(2.4)
19	인도(167)	벨리즈(2.2)
20	라오스(160)	레투(2.1)

자료원 : 臺灣 僑務委員會

Ⅱ. 화교자본의 생성과 기업 특성

1. 화교사회의 특성

- 혈연, 지연, 業緣을 중심으로 각 지역별로 연고를 최우선시하는 유대관계를 구축
- 근면과 검약에 큰 가치를 부여
- 지하 경제 활동이 활발
- 현지에 뿌리가 약한 화교 기업들은 투자 회수기간이 긴 제조업보다는 자본 유동성이 강하고 안전한 부동산, 호텔, 금융, 유통업 등에 사업영역이 집중
- 신화교의 등장, 즉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유학을 한 후 사업가로 변신하거나, 1949년 이후 본국의 공산주의를 혐오하여 국외로 이주하였거나, 1979년 이후 상당수의 동남아 화교들이 호주나 뉴질랜드로 재이주한 경우 등

2. 화교자본의 생성 및 발전 패턴

1) 화교 자본의 생성 과정

- 화교의 역사는 唐代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우리가 언급하고자 하는 화교 자본의 형성과정은 주로 19세기 말 20세기초에 걸쳐서 형성되어진 화교 자본이 주 대상
- 당시 화교의 출국 원인은 대부분 경제적 빈곤이었고, 이와 같은 배경에서 출국한 화교들은 소규모 상업에 종사

- 그 규모는 식민경제에 종속된 중간단계에서 원주민과 외국 자본을 매개하는 종속적 존재가 주를 이루어, 중소 규모의 잡화상이라는 화교 자본에 대한 일반적 이미지를 고착
- 제2차 세계대전이후 신생 독립국가가 출범하고 1960년대 이후 세계경제가 호황을 맞으면서 화교자본도 근대적인 형태로 발전
 - 독립 이전 외국자본과 원주민 사이에서 중계자의 역할을 하면서 일부국가(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나타난 화교와 원주민간의 경제적 불균형은 화교 자본의 발전에 장애 요소로도 작용
 - 1960년 이후 세계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화교 자본도 전통적인 소상공업과 수공업 위주의 경영에서 다양한 기업과 산업을 갖춘 개선된 구조로 점차 발전
 - 업종면에서는 소매 상업을 제외하고도 상당수의 중간상, 도매상, 수출입상으로, 공업분야에서는 금속, 기계, 차량, 방직, 의류, 고무, 도정, 연초, 건축자재, 목재 가공, 석유화학, 전자·전기 등 수많은 제조업 부문으로, 서비스업 중에서는 은행, 보험, 부동산업, 음식점, 관광, 항공운수 등의 업종에 진출하였고, 경영방식에 있어서도 전쟁전의 가족기업 중심에서 합자회사, 다국적 회사와 지주회사로까지 발전

2) 화교자본의 발전 패턴

- 화교자본이 발생하고 발전하게 된 패턴은 크게 정치, 식민지시대의 사업, 산업분야 등 세 가지 요인과 연계하여 설명 가능
- 첫째, 정치와의 연계;
 - 이는 화교자본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경제외적 요소로, 정치 상인형, 자조 노력형 등 두 가지 패턴으로 설명 가능

- 정치 상인형

- 화교자본을 배제하였음에도 경제발전을 위해 화교자본을 이용하려는 각 국 정부의 의도에 따라 정략적으로 결탁하여 발전
- 예를 들면, 수하르토 체제하에서 단기간 급성장한 다수의 政商(인도네시아), 마르코스 정권 당시 정실주의적 기업가의 득세(필리핀), 정치와 결합한 다수 유력 화교기업가의 성장(태국, 말레이시아)

- 자조 노력형

- 정치권의 특별한 보호 없이 스스로 성장
- 성장국면 속에서 자본의 국적을 불문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한 자본의 투자를 선호한 싱가포르를 대표로 한 동남아 대다수의 국가에서의 화교자본의 패권이 그 예임

○ 둘째, 식민시대의 사업;

- 식민지시대의 자산을 기반으로 발전한 계승형. 2차대전 후 사업기반을 일으킨 독자발전형으로 구분되지만 현재의 유력 기업가들은 예외 없이 세계대전 후 공업시대에 발전

- 거대 화교기업은 동남아 제국의 공업화 산물

○ 셋째, 산업분야와 연계;

- 전통적 산업 기반형

- 거주국의 대표적인 1차 산업(고무, 주석, 옥수수, 설탕 등)을 기반으로 발전한 화교기업으로 대부분 식민지 시대에 사업을 개시하여 전후 본격 발전
- 전통적 산업기반형의 존재는 공업화 시대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통적 1차 상품이 유력한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 흔한 유형
- 싱가포르의 이·Rubber그룹이 대표적

- 경제발전 주변형

- 공기업, 외국계기업 혹은 일부 국유기업이 주도한 공업 발전이 국내 시장을 활성화시켜 비공업분야에도 새로운 사업기회가 확대되면서 이를 기반으로 발전
- 금융, 부동산, 호텔, 백화점 등 금융, 상업, 서비스산업을 기반으로 사업을 성공
- 태국의 4대 금융그룹, 소비제품을 중심으로 발전한 사하(Saha)그룹은 이러한 발전의 대표적인 사례

- 공업기반형

- 동남아 국가들이 주력하는 제조업 분야에 참여하여 성장한 기업으로, 수입대체산업화 분야에서 발전한 기업과 중점제조업 분야에서 성장한 유형으로 구분
- 이 형태의 기업은 화교 자본을 중심으로 공업화가 진행된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으며, 수입 대체 산업분야에서 발전한 기업과 정부 주도의 중점 제조업분야에서 성장한 기업으로 분류가 가능
- 태국의 사림그룹, 인도네시아의 아스트라그룹, 태국의 유니온 그룹이 대표적

3. 화교기업의 경영 특징

- 화교기업은 전통적으로 가족 경영을 중심으로 하는 경영 형태를 유지. 이는 동남아 북미 등 거주지역을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 그러나 가족 경영도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대기업에서부터 점차 변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통적 화교정신에 서구식 경영방식을 도입하는 경영 철학이 대두
- 유형 자산이자 추가 자본을 취득할 수 있는 담보로서의 기능이 뛰어난 부동산 투자를 가장 선호

- 최근 부분적으로 과거의 부동산, 금융 중심에서 탈피하여 다각화 경영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주목되는 현상
- 경쟁하는 가운데서도 혈연, 지연, 業緣을 매우 중시하여 필요할 경우 사업상 확실한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경쟁과 협력의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
- 사주의 경영철학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인 일인 경영체제
- 화교기업의 경영철학은 다음 3가지의 주요한 특징을 나타내 줌
 - 정보교류의 신속 긴밀성 유지
 - 중국의 지도자와 두터운 개인적 친분을 유지
 - 국제적 공헌도가 높고, 화인 스스로도 이에 대해 높은 자긍심을 부여함 ; 이주국 경제에 기여하려는 감사하는 마음을 보유

Ⅲ. 세계화교 자본의 규모와 산업 구조

1. 세계 화교자본의 규모

- 세계 화교경제 발전은 동남아, 중국 경제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70년대 아세안 각 국의 자유경제정책 전환과 80년대 중국의 개혁 개방정책으로 발전계기를 마련
- 전 세계에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본을 신속히 이동시키고 있는 세계 화교자본의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대략 다음과 같이 추정이 가능
 - 첫째, 90년대 중반 기준, 전 세계에 최소한 약 2조 달러의 유동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
 - 둘째, 재산이 5억 달러 이상인 화교 기업인이 약 150명 정도로 추산
 - 셋째, 동남아에서 전체 인구의 6%, 자산은 86%, 각 국의 실질 경제장 약력 70% 이상으로 추정
- 중국, 홍콩, 대만 등 3개국만을 포함하는 중화경제권의 시장성은 역동적인 성장 예상
 - 중화경제권은 국제표준달러 기준 GDP 규모에서 1990년에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2002년에 가서는 미국을 능가할 것으로 전망(아래 표 참조)

<중화경제권의 GDP비교>

(단위 : 달러, 1조 달러)

4대 경제권	시장가격평가		국제표준 달러평가		
	1991	2002	1990	2002	1인당소득
중화경제권	0.6	2.5	2.5	9.8	7,300
미국	5.5	9.9	5.4	9.7	36,000
일본	3.4	7.0	2.1	4.9	37,900
독일	1.7	3.4	1.3	3.1	39,100

주 : 중화경제권은 중국, 타이완, 홍콩 등 3개국임

자료원 : 陸培春, 『華人網絡』, 1995

- 동남아 화교기업의 자산을 보면 30억 달러 이상인 재벌이 20개, 20-29억 달러인 기업이 29개
- 나라별로는 태국이 20억 달러 이상의 최상위 49 자산가 중 19명을 보유하여 거대 화교자본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나라로 주목

<재벌화교의 국별 분포>

(단위 : 명, 억 달러)

구 분	대만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합계
30억 달러 이상	4	5	4	3	3	1	-	20
20-29억 달러	2	4	15	1	3	3	1	29
10-19억 달러	12	9	11	3	6	4	4	49
6-9억 달러	3	7	3	2	4	-	-	19
3-5억 달러	46	20	12	15	6	4	9	112
1-2억 달러	35	19	1	11	-	8	6	80
억만장자 수	102	64	46	35	22	20	20	309
합계자산액 (1인당 자산)	613 (6.0)	633 (9.9)	670 (14.6)	285 (8.1)	346 (15.7)	173 (6.9)	138 (6.9)	2,858 (9.2)

자료원 : 陸培春, 『華人網絡』, 1995

- 1억 달러 이상의 자산가는 동남아에서 모두 309명이며, 이중 대만이 전체의 33%인 102명으로 최다
 - 합계자산 규모로는 태국이 670억 달러로 동남아 국가 중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홍콩, 대만이 각각 633억 달러, 613억 달러
- 홍콩에서 발간되는 시사 주간지 『亞洲週刊』에 따르면 1999년 세계 화상 500대 기업의 주식 시가 총액은 5,668억 달러
 - 이는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전에 6,881억 달러보다 낮은 수치임

2. 주요 국가별 분포

- 1999년 세계 화상 500대 기업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대만이 240개로 거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홍콩 105개, 싱가포르 67개로 이들 3개 화인국가가 전체의 82.4%를 차지
- 화교 인구 비중이 높은 말레이시아가 50개로 전체의 10%를 차지
-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전후의 국가별 변동 사항을 살펴보면, 대만과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위축 현상을 나타냄
 - 대만은 1997년 183개에서 1998년에는 285개로 증가하였다가 1999년에는 240개로 다시 감소하여 대만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동아시아 금융위기 영향을 덜 받았음을 시사
 - 싱가포르는 1997년 49개에서 1998년에는 37개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1999년에는 67개로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전보다 증가
 - 반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1996년 91개와 34개에서 1998년에는 41개와 9개로 크게 감소하였다가 1999년에 50개와 12개로 약간 증가하였으나 아직도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는 크게 미달

3. 산업별 구조

- 세계 화상들은 서비스업이나 제조업에 특화된 전문기업보다는 무역과 제조업, 금융, 부동산 등 다분야에 걸쳐 영업 활동을 하는 종합기업이 다수를 차지
 - 화상들은 위험 회피수단으로 업종을 전문화하기보다는 다양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종합기업이 세계 화상 500대 기업에서 차지하는 숫자는 1997년 38개에서 1998년에는 64개로 크게 증가
 - 세계화상 500대 기업 중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업체 수는 1997년 201개에서 1998년에는 227개로 비중이 5.2% 증가한 반면, 제조업체 수는 동기간 205에서 208개로 약간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냄
- 제조업 내에서 화상 기업들은 식료품업과 섬유산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특화되어 있으며 전자·정보산업에도 높은 비중을 차지. 반면에 화상들은 자본집약적 또는 장치산업인 기계산업과 석유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
- 서비스산업에서 부동산, 관광, 레저산업에 매우 특화되어 있는 반면 금융이나 무역 물류산업에서는 비교적 낮은 비중을 차지
 - 1998년 부동산, 건설, 관광, 레저산업의 경우 종합기업을 포함하면 172개로 전체의 34.4%를 차지한 반면, 동 산업이 세계 500대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에 불과
- 금융업이나 물류, 무역업에 대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1998년 금융업과 물류, 무역업 점유 숫자가 1997년보다 각각 6개, 3개 증가
 - 1998년 세계 500대 기업에서 금융업이 차지하는 숫자는 124개로 전체의 25%를 차지한 반면, 세계 화상에서는 77개로 15%에 불과

- 물류, 무역업 역시 세계 500대 기업에서는 점유 비중이 22%이나 세계 화상 500대 기업에서는 6%에 불과
- 1997년 시작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난 화교 자본의 사업전략 패턴은 크게 4가지로 정리
 - 신규투자, M&A, 증자 및 전략적 제휴 등 추진
 - 우량 자회사 매각과 핵심 주력 업종 중심으로 사업 재편
 - 국가 간 M&A와 국가 내 M&A 활발
 - 정보·통신 분야에 많은 투자(싱가포르 One 계획과 국제 전자상거래 거점 계획, 대만의 신죽과학공업원 등)

VI. 화교 네트워크

1. 형성과정

- 19세기 초 중국인의 해외 이주와 함께 상호원조를 목적으로 한 혈연, 지연, 業緣 등에 의한 화교 네트워크가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형성
 - 40년대에는 이러한 네트워크가 개별국가 내에서 통합되었으며 70년대에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국경을 초월한 네트워크가 형성
 - 80년대 이후에는 홍콩, 대만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는 화교들의 북미, 구주지역으로의 이주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북미 구주 및 동남아시아 지역을 연계하는 글로벌 화교 네트워크가 형성
 - 90년대 들어서서는 글로벌 화교 네트워크의 국제화 전략이 표면화. 이 전략은 아시아 화교 자본과 북미 첨단 기술을 결합하여 아시아태평양 경제회랑을 형성. 또한 이 전략에 의해 화교기업의 주요 업종이 사업, 금융업 및 노동집약 제조업에서 고 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2. 특성

- 화교 네트워크의 특징은 혈연, 지연 및 業緣 등으로 인한 강한 결속력
 - 이러한 결속력을 나타내 주는 대표적인 형태로는 幫, 세계화상대회 및 동창회 등으로 구분 가능
- 조직 내에서는 강한 결속력을 보이지만 조직간에는 심한 갈등을 표출하는 경우가 허다

- 동남아에서는 광동계, 객가계, 복건계가 경제적 이권을 중심으로 자주 갈등
-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신이민 지역에서 이주 역사가 오래된 광동계의 老僑와 대만, 홍콩 등 신이민을 중심으로 한 신교가 서로 대립

1) 幫

○ 방의 역사적 유래

- 과거 중국에서 정부는 황제를 위해 국민을 통치할 뿐 국민을 위한 정부는 아니었으며, 특히 원, 명 등 이민족 지배시대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
- 중국 국민들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하에서 스스로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생적으로 방을 형성하였으며, 방은 일종의 사회 보험적 성격이 강한 집단
- 청나라에 들어오면서 정부의 탄압에 의해 지하로 숨어들면서 방의 비밀성과 폐쇄성은 강화

○ 해외로 이주한 화교들에게도 幫이 절대적으로 필요

- 출신 지역별로, 업종별로, 각종 방과 회를 결성하여 내부 사회의 질서를 유지

○ 혈연, 지연, 業緣을 중심으로 각 지역별로 유대관계를 구축

- 同姓조직인 종친회, 동향조직인 동향회, 동업조합인 공회 등을 기반으로 화교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공회의 중앙조직과 중화총상회가 경제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수행
- 조직 내부간에는 강한 응집력을 갖고 있으나 이민족 또는 비조직원에게는 배타적 성향을 표출

○ 화교사회에서 작동되는 네트워크 중에는 동향관계가 가장 일반적인 유대의 끈

- 동향관계는 언어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 중국에는 수 백여 개의 종의 다양한 방언이 존재하며 방언은 중국 사람들을 구분화하는 중요한 수단. 방언의 차이로 인해 음식, 의복, 사회적 지위 등 전반적인 사회 문화적 특성 및 출신지역 구분이 가능
- 같은 문자를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서로 다른 방언간에는 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같은 방언 사용자간 유대관계가 강화되는 것이 일반적. 예를 들어, 복건방에 속하는 사람은 광동방에 들어가고 싶어도 고유언어인 광동어가 통하지 않아 불가능. 그러나 광동인이 아니더라도 고아동어를 구사할 수 있으면 광동방에 가입이 가능

○ 해외 화교 인구는 광동 복건 출신 순으로 구성

- 화교들은 중국 본토의 출신지에 따라서 광동계, 복건계, 조주계, 객가계, 해남계 등 5대계로 분류. 광동계와 복건계는 지리적으로 인접성 때문에 홍콩, 대만에 집중적으로 거주.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우는 태국에는 조주계가,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는 복건계가 주류를 형성. 그러나 각 국에는 여러 출신지가 혼재되어 있어 각 출신지별로 각각의 방을 형성
- 한편 광동출신(조주인, 객가, 해남 출신 포함)의 인구는 해외 화교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나머지 30%는 복건성 출신
- 그러나 대기업가 및 대 자본가 가운데는 복건 출신이 광동 출신을 상회
- 대만은 70%가 복건계이며 나머지는 대륙계, 객가계, 원주민 순

○ 화교들은 이러한 연을 통해 빠른 성장을 도모. 세계도처에서 중국인들이 있는 곳에는 그들끼리 모여 사는 차이나타운을 형성

- 즉 중국인들은 자기들의 이해를 보호하고 극대화하기 위하여 서로 단결하는 힘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

- 동남 아시아 지역에서는 구미 및 일본에 비해 현지 정부 또는 현지인들과 마찰을 우려한 나머지 굳이 차이나타운이라고 분리하여 끼리끼리 모여 사는 경우가 희박.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로 상부상조

2) 세계 화상대회

- 이는 공개적이고 구체적인 화교 조직으로서 세계 최대 규모의 화상 네트워크
- 동 대회는 2년마다 개최되며 세계 각 국에서 1,000여 명의 화상들이 참석하여 방언이나 선조들의 출신지와 관계없이 모든 화상들이 참석
- 대회는 만다린어 또는 영어로 진행되며 동시 통역 서비스 제공

3) 동창회

- 9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 화교 사회 및 국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화교 조직 내에서도 새로운 형태 즉 동창회를 통한 네트워크가 태동
- 동창회에는 같은 학교출신의 조직과 미국 유학과 조직이 대표적인 네트워크 형태
- 전자는 동일한 화교학교 출신이라는 공통성에 기초를 둔 조직으로서 일본 최대의 화교 학교인 고오베의 중화동학교 출신이 형성하고 있는 조직이 대표적인 사례
- 후자는 대만의 辜仲諒을 중심으로 한 모임이 대표적인 사례
 1. 辜仲諒은 1992년 대만 대기업집단의 제3세대들을 중심으로 일종의 오찬 모임인 書食會를 결성
 2. 이 모임에는 대만 플라스틱, 慶豐 등 대기업 그룹의 자제를 포함하여 약 50여명의 인원이 소속

- 3. 이들은 연령이 20대 중반부터 40대 초반까지로 대부분이 미국에서 수하간 유학생 출신이며 이미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는 인물로 존재
 - 4. 書食會는 그 조직을 확대하여 동남아시아지역의 3세 화교 경영자들 과도 연계를 도모하고 있으며, 향후 대만, 홍콩, 및 동남아 전체 차세대 경영자를 망라한 강력한 네트워크가 될 것으로 전망
- 이러한 현상은 광동방이나 복건방 등 전통적인 네트워크와는 별도로 동문회와 사친회 그리고 해외 유학과 등을 통한 새로운 네트워크의 비중이 점차로 높아져가고 있음을 의미

3. 중국 대만의 화교정책과 세계 화상 네트워크

1) 중국의 화교정책

(1) 화교정책의 변천과정

① 新中國 성립 이전과 국민당의 화교정책

○ 清朝의 화교정책

- 서양열강의 압력 하에 각종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면서 차츰 화교문제에 관심을 갖고 정책과 법률을 제정
- 清末(특히 1903-1911년 사이)의 주요 화교정책
 - 영사관 설립을 통한 화교의 권익보호
 - 교육사업을 통한 화교의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 확대
 - 국내에서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와 장려 등을 통한 화교의 국내산업투자 유치
 - 혈통주의 원칙에 입각한 국적법의 제정으로 나눌 수 있음

- 이러한 화교정책은 화교자본 유치, 화교를 통한 선진 생산기술과 경영 관리방법 도입 등으로 민족공상업의 근대화를 촉진시키고, 이후 정권의 화교정책 수립에 기초를 제공⁶⁾

○ 국민당의 화교정책

- 화교는 ‘혁명의 어머니’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화교들은 국민혁명의 재정적 기반으로 중화민국의 성립에 지대한 공헌
- 화교문제를 다루기 위한 기구로서 ‘僑務局’(廣東革命政府), ‘國民黨中央海外工作委員會’, ‘行政院僑務委員會’(南京政府) 등을 설립
- 1926년에 설정된 화교정책의 세 가지 기본목표
 - 화교들이 거주국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
 - 화교자녀들의 중국유학에 대한 편의 제공
 - 중국에 산업건설을 희망하는 화교에게 특별 보증
- 1947년 제정된 중화민국헌법에 명시된 화교관련 주요 정책적 목표
 - 화교 출신 국민당대회대표 · 입법위원 · 감찰위원을 선출하여 국정 참여
 - 화교권의 보호
 - 화교의 경제사업에 대해 扶助 · 보호
 - 화교의 교육사업과 사회사업에 대해 장려 · 보조 등
- 그러나 실제적으로 國內動亂과 대외전쟁으로 인해 국민정부는 화교보호정책 보다는 화교로부터의 재정지원을 기대하는 데에 중점
- 대만 철수 이후에도 경제 기반의 안정과 유엔 탈퇴로 인한 국제적 환경의 困難에 대처하기 위해 화교를 국가의 ‘外壁’ 또는 ‘反共復國’의 一翼으로 보는 기본입장을 견지⁷⁾

6) 毛起雄 · 林曉東 編著, 『中國僑務政策概述』(北京, 中國華僑出版社, 1993), pp.45-53.

7) 위의 책, pp.53-63; 禹政夏, 「中國의 華僑政策」, 『中國學論叢』1(國民大, 1985.3), pp.21-23.

② 개혁개방 이전의 화교정책

- 新中國 수립 이후 중국공산당은 統一戰線戰術에 입각, 해외화교를 인민 공화국의 유기적 구성분자로 보고, 그 것과의 단결을 화교정책의 기본 방침으로 설정
 - 1954년에 공포된 공화국 헌법 제98조에서 ‘중화인민공화국정부는 국외 화교의 정당한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한다’ 라고 천명하고 화교업무의 주관기관으로 國務院 ‘華僑事務委員會’ 설치
 - 동시에 全人大에 화교대표의 참가를 명시하여 화교의 국정참가를 허용
- 중국정부의 적극적 화교정책의 실질 목적은 경제적·정치적 이익의 획득
 - 경제적으로 ‘僑眷’⁸⁾에 대한 화교의 扶養送金·物資送付, 투자를 위한 송금 및 중국 產品의 對아시아 판로확대를 추구하고, 정치적으로는 화교를 중국의 혁명외교노선에 동조한 통일전선공작의 현지활동부대로서 활용
 - 화교송금을 위한 「華僑送金優待暫行辦法」 제정(1950년), ‘華僑投資公社’ 창설(1951년), 전국의 7개 省·6대 都市에 13개의 公私合營 華僑投資公社와 북경에 總公社 설치(1955년), 「國營華僑投資公社에 대한 投資優待辦法」 공포(1957년) 등
 - 화교투자 우대책에 의한 자금 유입과 화교루트를 통한 對동남아 무역 흑자 등 화교가 갖는 경제적 의의는 상당
- 문화대혁명이라는 정치적 변혁은 중국정부의 적극적 화교정책에 결정적 타격
 - 歸僑와 僑眷⁹⁾들을 일반 인민들과 평등하게 취급한다는 「一視同仁, 不得歧視」의 8자 방침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차별과 억압이 존재

8) 僑眷은 華僑·歸僑의 국내에 있는 眷屬 즉 화교·귀교의 배우자, 부모와 그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부계, 모계), 손자(부계, 모계) 및 화교·귀교와 장기간에 걸쳐 扶養관계에 있는 기타 친족을 의미.

9) 통계에 의하면 13억에 달하는 중국 인구 가운데 歸僑의 수는 약 90만 명이며, 僑眷은 약 2646만 명수준. 可兒弘明·游仲勳編, 『華僑華人 - ポーダレスの世紀へ』(東京, 東方書店, 1995), p.23.

- 문혁 당시에는 ‘海外關係複合論’, ‘華僑複雜論’을 근거로 歸僑와 僑眷들에 대해 심문·가택수사·형벌·下放·간부학교 입교 등에서의 부당대우, 공산당 입당·해방군 입대·임금 및 승진 그리고 결혼문제 관련 차별대우, 토지 및 재산 몰수·침해, 해외통신 간섭, 분묘 파손 등의 조치가 실행
 - 국무원 화교사무위원회 이하 각 지방의 화교사무기관 폐쇄, 화교사무 관련 幹部의 비판투쟁 회부 등으로 화교업무는 사실상 정지
 - 문혁 기간동안 대륙내 화교학대와 화교업무의 정지는 곧 대만의 華僑工作 伸張에 절호의 기회를 제공

- 인도네시아의 反華暴動(1965년), 마카오사건(1966년), 홍콩騷動사건(1967년), 미얀마의 랭군 反華暴動(1967년) 등의 사건은 모두 중공지도자가 화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결과로서 현지사회에 있어서의 화교의 비극과 중국의 국제적 고립을 초래하였고, 해외화교의 인심을 크게 대만으로 기울게 한 계기로 작용¹⁰⁾

- 문혁종식후 중국정부는 화교공작 부활과 화교사무기구 재건에 힘을 쏟았고, 특히 덩소평의 개혁 개방정책 이후에는 매우 적극적인 화교정책을 추진

③ 개혁·개방 이후의 화교정책

<대내 화교정책>

- 기본 방침은 「一視同仁, 不得歧視, 根據特點, 適當照顧」의 16字 원칙
 - 歸僑와 僑眷들을 일반 인민들과 같이 평등하게 취급하는 한편, 해외에서 생활체험과 해외와 관계를 갖고 있는 그들의 특징에 기초하여 적절히 배려한다는 의미
 - 1979년부터 1989년까지 10여 년 동안 僑辦 및 公安部는 歸僑와 僑眷에 대한 과거의 정치적 판정 60여만 件를 재심사하여 6만 4500여건을 시정 및 명예회복 조치

10) 禹政夏, 앞의 글, pp.11~14.

- 이는 「一視同仁, 不得歧視」의 방침을 충실히 이행하여 개혁·개방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해외화교 자본에 대한 환심을 사기 위한 조치로 해석
 - 「根據特點, 適當照顧」 방침이 1978년 추가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
- 중국의 대화교정책은 1991년 공포된 「中華人民共和國歸僑僑眷權益保護法」에 집약
- 동 법률은 전문 2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제3조에 그 기본 방침이 설명되어 있는바, "귀교·교권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으로서 어떤 조직 단체도 이들을 차별해서는 안된다(不得歧視)"라고 명기하고 "국가는 이들에 대해 적절한 배려를 행한다(適當照顧)"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그 구체적 조치는 국무원이 정하도록 명기하고 있어 국내 화교정책의 중요성을 암시
 - 동 법률의 시행은 歸僑와 僑眷이 형성하고 있는 해외 華僑·華人 네트워크 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기인¹¹⁾
 - 한편에서는 동 법률의 제정이 歸僑와 僑眷을 특수국민으로 대우하기 위함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도 제기
 - 동 법률에 의한 제도적 지원하에 중국당국은 화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 각종 우대조치와 적극적인 유인정책을 시행¹²⁾
 - 첫째, 화교들의 자금을 유치함과 동시에 그들의 기술과 인재도 함께 흡수하기 위해 노력
 - 둘째, 화교(홍콩·마카오 포함)들의 정보망과 언어 및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국내 產品의 수출 촉진
 - 셋째, 이미 유치한 화교투자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투자자들의 친목단체와 활동을 조직·거행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관계를 증진 시킴으로서 더 많은 외자유치를 촉진
 - 넷째, 더 많은 '僑屬'(화교관련) 기업들이 현행의 우대정책을 이용하여 자금과 기술·설비·정보를 끌어들이도록 유도

11) 『東北아시아 中華經濟圈과 韓國經濟』,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382호, 1997), pp. 50~52..

12) 毛起雄·林曉東編著, 앞의 책, pp.107~117.

- 다섯째, 화교(홍콩·마카오·대만 포함)들의 기부를 통한 교육사업을 계속 장려하고 화교송금 감소 원인에 대해 연구하여 조정 등으로 축약

<대외 화교정책>

○ 대외 화교정책의 4대 기본방침

- 첫째, 화교에 대한 이중 국적 불인정과 거주국의 국적 취득 권유(화교의 華人化)
- 둘째, 화교의 정당한 권리 보장과 화교 거주국 정부에 대한 화교의 합법적 권익 보장 요구
- 셋째, 화교에 대해 거주국의 법률 존중과 거주국 국민과의 우호 관계 유지를 통해 장기간 그들과 공존할 수 있도록 교육
- 넷째, 화교의 애국주의 정신 發揚과 조국사랑 장려를 통해 화교동포의 전체 단결을 도모¹³⁾

○ 동 방침에 입각한 중국당국의 對화교관련 사업의 골자

- 화교들이 거주국에서 장기적으로 생존·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를 표하고 궁극적으로 중국과 각국간의 우호협력과 교류의 교량으로 활용
- 화교사회내 宗親·同鄉·商會 등 각종 단체와 거주국 현지에 영향력 있는 인사와의 연계를 통해 더 많은 화교엘리트들을 중국으로 초청하여 실상 이해와 현대화건설에 직·간접적인 참여 유도
- 대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화교단체와 인사들을 포용하여 양안 대화의 창구역활을 기대함과 동시에 대만의 입지 약화를 모색
- 동남아 지역에 거주하는 대만출신 화교들은 중국관리들이 제시한 세금 우대 및 토지임대 정책 등에 이끌려 對中投資를 실행하고 있으며, 베트

13) 『東北아시아 中華經濟圈과 韓國經濟』, p. 52.

남 호치민市 주재 대만상공회의소 「루쑤린」 소장은 "중국관리들은 親 대만 성향을 보이는 화교들과 접촉할 때, 그들에게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고 단지 '우리는 당신들과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동포입니다' 등과 같은 완곡한 표현을 즐겨 사용한다"라면서 "중국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이러한 접근방식은 놀랄 만큼 효과적이다"라고 평가¹⁴⁾

- 중국의 사회주의 현대화건설과 조국통일대업 및 외교노선과 방침에 대한 선전 강화와 화교들의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각종 형태의 교육·문화사업을 전개
- 화교 청소년에게 중국문화를 널리 알리고 조국에 대한 이해와 감정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화교학교와의 교류 증대와 중국내 화교관련 교육기관의 교과과정·교수법 등을 개선¹⁵⁾
- 현재 중국정부는 동남아지역의 화교학교에 중국어 서적들을 상당량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대만이 화교들의 충성심을 고양하기 위해 장기간 사용해오던 방법
- 화교의 12배에 달하는 화인들에 대한 대책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으나 歸僑와 화인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는 부재
- 대사관, 영사관 및 공사관 등 재외 공관에서도 화인들은 화교 못지 않은 중요한 위치를 점유
- 이들 화인은 화교와 마찬가지로 친족·혈연관계 또는 동향·동업 등의 관계를 통해 중국과 깊은 연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대외 화교정책을 화인에게도 적용
- 이러한 화교·화인정책은 화교·화인들의 권익보호와 더불어 이들이 형성한 대만·홍콩 등과의 네트워크 나아가서는 이들을 매개로 한 각국과의 경제교류가 중국 경제발전에 상당한 순기능을 한다는 판단에서 기인¹⁶⁾

14) *Far Eastern Economic Review*, 2001년 6월 21일자.

15) 毛起雄·林曉東編著, 앞의 책, pp.322~348.

16) 『東北아시아 中華經濟圈과 韓國經濟』, pp.52~53.

<대만문제 관련 중국의 화교정책>

○ 중국정부의 의도

-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지위를 약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화교들의 역할’을 점차 중시
 - 이는 과거 대만이 전세계 화교들에 대해 정치·경제적으로 크게 낙후되었던 중국보다 훨씬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상황과 극명하게 대비
 - 중국의 개혁·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중국경제의 거대한 잠재력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전세계 화교들도 이러한 중국의 변화를 충분히 감지하고 중국에 호의적인 입장
- 막대한 對中投資와 더불어 중국이 화교들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얻는 또다른 직접적 효과는 양안관계에서의 질적 우위
 - 중국정부는 화교세력의 지지를 확보, 중국이 전세계 중국인들의 ‘母國’이라는 인식을 확립함으로써 기존 화교내의 압도적인 親대만지지 성향을 역전시키기 위해 노력
- 중국정부는 지난 2000년 워싱턴과 베를린에서 각각 개최되었던 「대만독립 반대 및 통일을 위한 華僑大會」를 적극 지원하고, 해외거주 화교들에게 대만이 독립을 추구함으로써 중국의 분열을 획책하고 있다는 우려를 갖도록 유도하는 기회로 활용
- 반면 2001년 5월말 대만에서는 대만 僑務委員會(OCAC)가 후원하는 華僑大會가 개최되어, 전세계로부터 모여든 300여명의 각지 화교 대표자들이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화교세력 포섭 노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집중 논의
- 화교들로 하여금 대만이 중국영토의 일부라는 주장을 정당한 것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이러한 전략은 국제사회에서 진정한 강대국으로 부상하기를 열망하는 중국정부의 의도도 반영

○ 대만의 대응 및 한계

- 현재 대만은 중국의 적극적인 對화교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
- 중국정부가 화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20만명 이상의 인원과 막대한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대만 僑務委員會의 인원은 360명에 불과하고, 연간 예산도 5,600만달러 수준¹⁷⁾
- 대만정부는 중국의 공산주의와 열악한 인권상황을 여론화하며 화교들의 도덕적 가치관에 호소하는 전략으로 대응
- 최근에는 대만의 정치체도가 중국에 비해 우월하다는 점을 화교들에게 널리 인식시키기 위해 대만출신 화교들이 자신의 출신 지역 정치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
- 중국의 공세가 점점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물적·인적자원에 있어 중국에 비해 열세에 놓인 대만의 이러한 전략은 실효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2) 중국경제에 있어 화교의 역할과 비중

○ 중국의 對화교권 수출입 규모¹⁸⁾

- 2001년 중국의 전체 대외무역액 5,097억달러 중 아시아내 화교권 8개국/지구에 대한 무역액은 1268억달러로 전체의 24%를 차지
- 구체적으로는 홍콩 560억달러(수출 466억, 수입94억달러), 대만 323억달러(수출 50억, 수입 273억달러), 싱가포르 109억달러(수출 58억, 수입 51억달러), 말레이시아 94억달러(수출 32억, 수입 62억달러), 태국 70억달러(수출 23억, 수입 47억달러), 인도네시아 67억달러(수출 28억, 수입 39억달러), 필리핀 36억달러(수출 16억, 수입 20억달러), 마카오 9억달러(수출 8억, 수입 1억달러)의 순서

17) 臺灣 僑務委員會 자료, FEER, 앞의 일자.

18) 中國 對外貿易經濟合作部 통계 인용(www.moftec.gov.cn)

- 이는 유럽 976억달러(수출 492억, 수입 484억달러), 일본 877억달러(수출 449억, 수입 428억달러), 미국 805억달러(수출 543억, 수입 262억달러), 한국 359억달러(수출 125억달러, 수입 234억달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

○ 화교자본의 대중국투자 규모

- 오늘날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화교자본의 대륙진출에 기인
- 2000년 중국에 실제 유입된 407억달러의 해외 투자중 화교권 자본은 216억달러로 전체의 53%를 차지
 - 구체적으로는 홍콩이 162억달러, 대만 23억달러, 싱가포르 20억달러, 말레이시아 4달러, 마카오 3억달러, 태국 2억달러,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각 1억달러의 순서
 - 반면 미국은 43억달러, 일본 33억달러, 유럽 47억달러, 한국은 15억달러 수준에 그쳐 해외자본 유입에 있어 화교권 국가는 상당한 비율을 점유

○ 화교자본의 중국경제 부양 효과

- 외자에 대한 중국의 문호 개방은 화교들에게 잉여자본을 투자할 ‘공간’을 제공했고, 화교자본은 역으로 중국의 산업 재조정과 지속적 성장에 밑거름으로 작용
- 화교들의 투자는 동남부지역의 경제개발을 가속화, 중국을 역동적인 수출주도형 경제로 전환시키는데 일조
 - 화교들은 중국내 제조품의 세계 시장 판매(홍콩을 경유)에 중요한 통로 역할 수행
 - 동남부지역은 홍콩 대만 등과의 지리적 인접성과 언어·문화의 동질성, 혈연중시경향 등으로 화교의 투자 선호지로서 기능
- 더불어 중국내 지방부문의 대폭적인 생산력 증가 효과
 - 향진기업과 화교기업의 각종 합작관계를 중심으로 한 비국유 외자기업은 현재 중국 산업생산의 절반을 점유

○ 화교자본의 대중국 투자 특성

- 투자지역에 있어 화교기업은 일반적으로 동남부지역에 치중해 온 관행
 - 점차적으로 강소성과 절강성을 포함하는 양자강 삼각주 상부지역과 안휘성, 광서성과 호남 강서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
 - 반면 미국, 유럽, 일본 등 서구의 초대형 다국적 기업들은 상해·북경 등 상업중심 도시 위주로 투자
- 동남아 각 국의 화교는 대중투자 전략과 단계에 있어 다소 상이한 특성을 표출
 - 인도네시아 화교의 경우 주로 복건성과 북경 등지에서 산업공단을 조성하거나 은행업, 부동산업, 시멘트제조업, 건설업, 농업관련 산업에 참여
 - 필리핀 화교들은 복건성을 중심으로 소기업 위주의 경영
 - 말레이시아는 과거 양국간 정치적 갈등으로 투자관계에 적지 않은 제약을 받아왔으나, 상황호전에 따라 대중투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투자지역을 선정할 때 비교적 개발돼 있는 지역을 선호
 - 미얀마, 싱가포르, 태국 등의 화교들은 그 동안 농작물재배나 통신, 기계, 부동산 등 일부 사업에 국한해 투자했으나 점차 사업영역을 확대·다변화해 나가는 추세

2) 대만의 對화교정책

(1) 대만정부의 화교정책 방향

- 대만은 중국과 달리 화교들에 대해 50년대 초부터 정부차원에서 관리
 - 정부 조직에 僑務委員會(장관급)를 설립하여 화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
- 50-60년대까지 화교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화교 자본 유치
- 1972년 중공의 UN가입 이후 화교정책의 우선의 경제 중심에서 외교 중심으로 전환

- 화교들을 외교 공간 확보 수단으로 활용
- 화교 자제들을 대만 유학을 적극 장려하여 친 대만파를 양성
- 90년대에는 화교정책을 외교정책 지원과 대외 경제협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
 - 대만의 수출과 해외 투자에 화교들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각 국가별 대만 상인회 등 관련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정부 차원에서 관리
 - 미국을 중심으로 친 대만계 로비 단체를 조직하고 이에 대해 자금 등을 지원
- 세계 화교기업들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화교신용대출보증기금”을 운용
 - 1999년 7월 말 누계 기준, 보증 건수는 2,204건, 금액은 3억 5,087만 달러를 화교들에게 보증
- 대만정부는 외교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위대로 세계 각지의 친대만파 화교, 또는 대만 기업으로 각 국에 투자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각 국가별 대만상인회를 결성
 - 각 국가별 대만 상인회는 대륙별로 아시아 대만 상인회, 구주대만 상인회 등 대륙별 상인회를 구성하고 대륙별 상인회는 다시 세계 대만 상인회를 결성
 - 최근 대만 상인회의 주 관심사는 대만의 WTO가입 추진과 대만 외교 공간 확보 및 대만과 거주 화교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등
 - 이들 대만 상인회의 운영자금 일부를 정부의 교무위원회가 지원
- 21세기 대만 화교정책의 방향

- 화교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계적으로 중국어 인터넷 교육망을 구축. 전 세계 3,000여 개의 화교 학교를 상대로 1998년 성립
- 세계 화상 네트워크 구축. 전 세계에 1,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3만여 명의 화상들을 지원
- 화교 위성 TV. 2000년 5월 5개의 인공위성을 활용해 24시간 방송

(2) 세계 화상경제 무역회의와 화상 네트워크

- 대만의 경제발전과 외교정책, 대만계 화교들간 경제, 무역, 투자 관련 정보 교류 및 관계 형성을 위해 1963년 일본 동경에서 세계화상경제무역회의 창립대회를 개최
- 2-3년마다 세계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회의가 개최되며, 1998년 대만에서 21회 대회가 개최. 이 대회에는 세계55개 국가에서 970명의 화교 기업인이 참가하였으며, 22회는 2000년 4월 브라질에서 개최
- 대만정부는 僑務委員會 주관하에 대만경제를 지원하는 세계화상들의 네트워크인 ‘세계화상경제무역반 수료생 총회’를 설립
- 교무위원회는 1972년부터 기업관리, 국제무역, 공장관리 등을 주제로 16년 동안 98회의 각종 화교 경제 관련 연수회를 개최하여 4,320여 명의 화교들을 교육하였으며 이들 교육생들을 중심으로 총회를 형성
- 1999년 10월 타이베이에서 세계 각지의 화상 333명이 창립총회를 개최
- 1999년 5월에는 교무위원회 주관 하에 대만중심의 화상네트워크 구축과 화상들간 투자정보 교류를 위해 아시아금융위기 극복과 21세기 도전이라는 주제로 200여명의 화상과 80여명의 국내 기업인이 참여한 가운데 타이베이에서 화상국제투자합작위원회 등을 개최

- 또한, 대만 정부는 세계 화교 금융인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교류를 위해 세계화교금융우호회의를 운영. 이 회의는 1999년 9월에 제16차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2000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은행 주최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개최

3) 싱가포르 주도의 세계화상대회

(1) 개최배경과 목적

- 世界華商大會의 창설은 국제적인 화교 네트워크를 형성하려는 대표적인 사례
- 1990년대 선진국의 WTO를 중심으로 한 개방주의와 EU, NAFTA 등 지역주의에 소외되고 있는 화교 기업인들이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 수단으로 결성한 민족 경제협의체
 - 중국과 동남아를 생산기지로 홍콩과 싱가포르를 금융중심지로 북미와 유럽, 대양주를 소비지로 전세계적 화교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구상으로 1991년 싱가포르 李光耀 당시 수상이 제안
 - 싱가포르 주도하의 세계화상대회는 親중국적 의사를 강하게 표출하며 대만은 동 대회에 불참
 - 1991년 싱가포르 대회를 1회로 격년제로 세계 주요 화교 거점 도시에서 개최
- 제1차 대회(1991년, 싱가포르): 창립대회로 700여명이 참석하여 화교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직면과제를 논의
- 제2차 대회(1993년, 홍콩): 840명이 참석하여 세계 경제 동향, 화교들의 세계 경제에서의 역할 등을 논의
 - ‘ABC 3원칙(Acceptance, Belonging, Commitment)’을 채택하여 현지국 사회와의 융화를 기본으로 한 화교사회의 단결을 도모¹⁹⁾

19) 한광수, 앞의 책, p.238.

- 제3차 대회(1995년, 방콕): 1,500여명이 참석하여 세계 화상 네트워크 형성, 화교 기업들간 교역,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
- 제4차 대회(1997년, 밴쿠버): 1,300여명이 참석하여 “전자통신과 과학기술”을 주제로 논의
- 제5차 대회(1999년 멜버른):
 - 1999년 10월 6일~9일간 호주 멜버른에서 멜버른 중화총상회 주최로 개최
 - 21세기의 도전을 주제로 중국 사회문화의 원동력, 미래 화교기업인들의 창조, 과학기술과 상업, 미래의 전망 등에 대한 세미나와 화상들간 무역과 투자 전시회 및 산업시찰이 진행
 - 세계 각 국 화교 단체 및 기업인 약 800여명이 참석
 - 제3차대회부터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하고 있는 중국은 금년에도 각 급 정부, 기업대표로 구성된 400여명의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 반면 대만은 지진과 중국의 대규모의 참석에 반발하여 소규모의 기업가들만 참석
 - 한국의 화교들도 한국화교경제연합회의 명의로 대회 사상 최초로 초청을 받아 정식으로 참석
 - 동 대회를 계기로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를 축으로 한 화인 국가와 호주, 캐나다, 미국 등 세계 주요 화교 거점지역의 화교기업인들간의 네트워크 형성이 한층 가시화
 - 중화경제권의 핵심 국가인 중국이 대규모의 대표단을 파견함으로써 세계 화교네트워크와의 연계 강화를 적극 도모
 - 세계 화상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상설 사무국 설립을 결의
 - 제1, 제2, 제3대회 주최 기관인 싱가포르, 홍콩, 태국 중화총상회를 중심으로 사무국을 구성

- 제6차 대회(2001년 南京): 77개국 3,300명이 참석하고 11억 달러의 예산이 소모된 대규모 대회로서 향후 중국이 세계 화교 경제권의 중심적 역할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표출된 대회
- 세계화상대회의 출범은 화교기업의 세계화 과정에서 경제원리와 문화적 동질성의 결합이 토대가 되고 있음을 반영
- 그러나 화상대회가 화교 기업인들만의 전 세계적 네트워크 형성에만 국한되고 있어 세계화의 본질에 위배된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화교사회 일부에서 대두

4) 세계 화상 인터넷 네트워크

(1) 세계화상 인터넷 네트워크(World Chinese Business Network: WCBN)

- 1993년 제2차 세계화상대회에서 이광요 싱가포르 전 수상이 제의
 - 세계 화상간 무역 투자 등 경제관련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교류함으로써 상호간의 긴밀한 유대관계 형성
 - 싱가포르 중화총상회 주관 하에 1995년 12월 8일 인터넷 개통
- 1999년 싱가포르 중화총상회, 聯合早報 등 신문 업계가 공동 출자하여 세계화상네트워크(<http://wcbn.asial.com.sg>)를 설립
 - 영문판, 중문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 20여 개 국가의 화교 기업들 정보를 수록
 - 1999년 말까지 10만 여 개의 화교 기업 정보를 수록할 예정

(2) 대만의 세계화상정보망

- 대만정부의 "國家情報通信 基本建設計劃" 연계와 세계 화교들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만 정부 조직인 僑務委員會가 全球華商諮詢網 : GCBN(<http://www.gcbn.net>)을 1998년 건설

(3) 세계 주요 화상관련 인터넷 사이트

- 세계 화상 관련 인터넷은 싱가포르 중화총상회의 WCBN과 대만 교무위원회 GCBN 외에도 각 지역의 차이나타운, 중화총상회, 혈연조직인 종친회 등을 중심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
- 대표적 종합 사이트
 - 中國海外交流協會 : www.coea.org
 - Welcome to Worldwide Chinese Association : www.worldwidechineseasso.org
 - Overseas Chinese Youth Associatio : www.ocya.org
 - Huaren : www.huaren.org
 - 中國華僑諮詢網 : www.overseaschinese.org.cn
 - 世界華人組織 : www.cwo.org
 - 海外中國青年會 : www.lulala.org
- 차이나타운 관련 사이트
 - 世界中國城 : www.china-town.net
 - San Francisco Chinese Chamber of Commerce : www.sfchinatown.com
- 종친회 사이트
 - 新加坡宗鄉會館聯合總會 : <http://sfcca.org.sg>
 - 客家公會 : <http://kluang.net/hakka>

○ 거주지역별 사이트

- 中華工商總會 : www.kluang.net/kluccci

○ 직업별 사이트

- 酒商公會 : www.kluang.net/growine

○ 출신지역별 사이트

- 江蘇省歸國華僑聯合會 : www.huaqiao.jsinfo.net

법규와 제도

『세수징수관리법 실시세칙』의 주요 내용

□ 세수징수관리법은 세정과 납세의 근본이 되는 법률로 중국 국무원이 200년 9월7일부로 새로운 세수징수관리법(2002년 5월 1일부로 시행)의 실시세칙인 『세수징수관리법 실시세칙』을 개정 공포함(2002년 10월 15일부로 시행)

□ 목적

- 세무기관의 정보화 관리를 통한 국가세수 보장
- 조세징수 및 납부 행위의 규범화
- 납세자의 권익보호

□ 주요 내용

○ 세무 등기

-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영업허가증 수령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장소 또는 납세의무 발생지 주관 세무기관에 세무등기신청을 해야 함

○ 장부 및 증빙서류 관련

-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영업허가증 교부일 또는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련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치해야 하며 장부, 회계증명 및 보고서는 중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외국계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은 외국어를 병행해 사용 가능

○ 납세신고 및 세금 납부

- 납세자 자진 납세신고제도를 확립, 세무기관의 승인 하에 우편 송부 EDI 방식으로 납부

- 납세자에게 ‘특별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금납부 기한 연장 신청 가능(연장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납세자, 원천징수 의무자 및 납세보증인이 납부명령 기간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예금이나 압류재산을 매각해 처리함

○ 법률책임

- 세무등기 불성실 : 2천 위안 이하의 벌금. 사안에 따라 2천~1만 위안 이하의 벌금 부과
- 세무등기 사용 불성실(납세완납 증명의 매매, 변조 또는위조) : 2천~1만위안 이하의 벌금. 사안에 따라 1만~5만 위안 이하의 벌금 부과
- 신고 납부 불이행 : 2천 위안 이하의 벌금. 사안이 심각한 경우 2천~1만위안 이하의 벌금. 무신고 또는 무·과소(過少) 납부의 경우 미징수액의 0.5~3배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
- 탈세행위 : 미징수액의 0.5~5배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
- 과세 근거자료 변조 : 5만위안 이하의 벌금
- 부정 환급 : 환급액의 1~5배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실시세칙 (中華人民共和國 稅收征收管理法實施細則)

(국무원령 제362호 2002년 9월 7일, 2002년 10월 15일 부 시행)

제1장 총 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세수징수관리법」(이하 ‘세수징수관리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본 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세무기관이 법에 따라 징수하는 각종 조세수입의 징수관리는 세수징수관리법 및 본 세칙을 적용한다. 세수징수관리법 및 본 세칙에 규정이 없을 경우, 기타 관련 세수법률과 행정법규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한다.

제3조 어떠한 부서, 기업 및 개인이 결정한 것이든 세수법률과 행정법규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모두 무효이므로 세무기관은 이를 시행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사실을 상급 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납세자는 세수법률과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체결한 계약, 협의 등이 세수법률과 행정법규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모두 무효이다.

제4조 국가세무총국은 전국 세무시스템 정보화를 위한 총괄 기획, 기술표준, 기술방안 및 실시방법의 제정을 담당한다. 각 급 세무기관은 국가세무총국의 총괄 기획, 기술표준, 기술방안 및 실시방법에 따라 당해 지역의 세무시스템 정보화에 필요한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지방 각 급 인민정부는 적극적으로 세무시스템 정보화업무를 지원하며, 정보화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한다.

제5조 세수징수관리법 제8조의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비밀보호사항’이란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상업상의 비밀 및 개인의 사생활을 말한다. 따라서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세수법률위반행위는 비밀보호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제6조 국가세무총국은 세무공무원의 근무준칙과 복무규범을 정한다.

상급 세무기관이 하급세무기관의 세수법률위반행위를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하급 세무기관은 상급 세무기관의 결정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해야 한다.

하급 세무기관이 상급 세무기관의 세수법률위반행위를 발견했을 때에는 상급 세무기관 또는 유관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세무기관은 고발인의 공헌 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지급에 필요한 예산은 세무 부서의 당해연도 예산에 편입하고, 단일 예산항목으로 심의 결정한다. 포상금의 구체적인 사용방법 및 포상기준은 국가세무총국이 재정부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 납부할 세액의 심의결정, 세수정액 조정, 세무조사 실시, 세무행정처벌의 집행 및 세무행정처분의 재심 시에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표자나 직접책임자와 다음 관계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회피하여야 한다.

1. 부부관계
2. 직계혈족관계
3. 3대 이내의 방계 혈족관계
4. 사돈 친인척 관계
5. 공정한 법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이해관계자

제9조 세수징수관리법 제14조의 ‘국무원 규정에 따라 설립하고 사회에 공포된 세무기구’란 성(省) 이하 세무국의 조사국(稽查局)을 말한다. 조사국은 탈세, 체납세액 추징, 납세사기, 납세거부 등에 관한 조사 처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한다.

국가세무총국은 세무국과 조사국의 업무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업무가 중복되는 것을 방지한다.

제2장 세무등기(사업자등록)

제10조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은 동일 납세자의 세무등기에 대해 동일한 납세번호를 지정사용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구체적인 세무등기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정한다.

제11조 각 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동급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에 정기적으로 개업, 변경, 등기취소 및 영업허가 취소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구체적인 통보방법은 국가세무총국과 국가공상행정 관리총국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영업허가증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장소 또는 납세의무 발생지 주관세무기관에 세무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세무등기신청서류는 사실대로 작성해야하며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 및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가기관과 개인을 제외한 전(前) 항 규정 이외의 납세자는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세무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개인소득세 납세자의 세무등기 방법은 국무원에서 별도로 정한다.

세무등기증 서식은 국가세무총국이 정한다.

제13조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원천징수등기신청을 하고 원천징수등기증을 수령해야한다. 세무기관은 기존에 세무등기를 마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서는 당해 세무등기증에 원천징수사항을 등재하고 별도의 원천징수등기증은 교부하지 않는다.

제14조 세무등기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납세자는 공상행정관리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 변경등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종전 세무등기기관에 세무등기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납세자의 세무등기내용에 변동이 있지만 공상행정관리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 변경등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변동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종전 세무등기기관에 세무등기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납세자가 해산, 파산, 영업허가취소 및 기타 사유로 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종료하게 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 등기취소 신고를 하기 전에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종전 세무등기기관에 세무등

기취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서 등기취소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관련기관이 취소승인 또는 종료신고를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종전 세무등기기관에 세무등기취소신고를 해야 한다.

납세자가 주소 또는 영업장소를 이전하여 주관 세무등기기관이 변경되는 때에는 공상행정관리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 변경신고 또는 등기취소 전, 또는 주소나 영업장소 이전 전에 종전 세무등기기관에 세무등기취소신고를 하고 30일 이내에 변경된 세무기관에 세무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기타 기관이 등기를 취소한 경우, 납세자는 영업허가 또는 등기가 취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종전 세무등기기관에 세무등기취소신고를 해야 한다.

제16조 납세자는 세무등기취소신고 전에 세무기관에 납부할 세액, 체납금, 벌금을 완납하고 세금계산서, 세무등기증 및 기타 세무허가서를 반납해야 한다.

제17조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기본예금계좌 또는 기타예금계좌를 개설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계좌번호를 주관세무기관에 서면 보고한다.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주관세무기관에 서면 보고한다.

제18조 납세자는 규정에 의거 세무등기증 발급이 필요치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사항을 처리할 때 반드시 세무등기증을 소지해야 한다.

1. 은행계좌 개설
2. 세액감면 또는 환급 신청
3. 신고납부 연기신청
4. 세금계산서 구입수령
5. 외지경영활동 세무관리증명 발급신청
6. 영업중단 또는 휴업 신고
7. 기타 세무에 관련된 사항

제19조 세무기관은 정기적으로 세무등기증을 검열 또는 갱신한다. 납세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관련 세무등기증을 지참하고 주관세무기관에서 검열 또는 갱신 수속을 해야 한다.

제20조 납세자는 세무등기증 원본을 생산 경영장소나 사무실에 공개적으로 비치하고 세무기관의 검사를 받는다.

세무등기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주관세무기관에 서면 보고하고 신문에 공고하여 폐기한다.

제21조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다른 현(시)에서 임시로 생산 경영활동을 할 때는 세무등기증 부분과 소재지 세무기관이 발급한 외지경영활동 세무관리증명을 지참하여 영업지 세무기관에 세무등기증 검열신고를 하고 세무관리를 받는다.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의 외지경영이 같은 지역에서 180일을 초과했을 때에는 당해 영업지에서 세무등기수속을 해야 한다.

제3장 장부, 증빙서류 관리

제22조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영업허가증을 교부받은 날 또는 납세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가관련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치해야 한다.

전 항에서 ‘장부’라 함은 총계정원장, 명세장, 일기장 및 기타 보조장부를 말한다. 총계정원장, 일기장은 제본형식이어야 한다.

제23조 생산 경영규모가 작고 장부 비치 기장능력이 없는 납세자는 회계대리 기장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또는 세무기관에서 인정하는 회계원으로 하여금 장부기장 및 회계업무를 대신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상술한 기관이나 회계원을 고용하기 어려운 경우, 현(縣) 이상 세무기관의 승인을 얻어 세무기관 규정에 따라 수입지출증빙대장, 상품출납부 또는 세무통제장치(稅控裝置)를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세무등기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무·회계제도 또는 재무·회계처리방법을 주관세무기관에 보고하고 등록한다.

납세자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장하고자 하는 때는 사용 전에 회계전산화 시스템의 회계프로그램, 사용설명서 및 관련자료를 주관세무기관에 보고하고 등록해야 한다.

납세자가 설치하는 회계전산화시스템은 국가관련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납세자의 수입 또는 소득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어야 한다.

제25조 원천징수의무자는 세수법률과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원천징수 세목에 따라 원천징수 관련장부를 구분하여 비치한다.

제26조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회계제도가 건설하고 수입과 소득 또는 원천징수상황을 정확하게 전산 처리할 수 있는 경우, 컴퓨터에서 출력된 회계기록을 회계장부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회계제도가 건설하지 않거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입과 소득 또는 원천징수상황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 또는 원천징수와 관련된 장부를 비치해야 한다.

제27조 장부, 회계증빙 및 보고서는 중문으로 작성해야 한다. 소수민족자치 지역은 당해 지역에서 통용되는 민족문자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은 외국문자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8조 납세자는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세무통제장치를 설치 사용해야 하며, 세무기관의 규정에 따라 관련 데이터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세무통제장치의 보급 및 응용에 대한 관리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별도로 정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29조 장부, 기장증빙, 결산서, 납세완납증명서, 영수증, 수출증빙 및 기타 세무 관련자료는 합법, 진실, 완전해야 한다.

장부, 기장증빙, 결산서, 납세완납증명서, 영수증, 수출증빙 및 기타 세무 관련자료는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단, 법률이나 행정법규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장 납세신고

제30조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자진납세신고제도를 확립한다.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무기관의 승인을 얻어 우편 또는 전자방식을 이용하여 납세 또는 원천징수 납부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전자방식’이란 세무기관이 정한 전자화언어, 전자데이터 교환 및 인터넷 전송 등의 방법을 의미한다.

제31조 우편방식을 이용하여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규격화된 납세신고 전용봉투를 사용해야하며, 우체국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신고 증빙서로 간주한다. 우편신고는 우체국의 소인일자를 실제 신고일자로 본다.

전자방식을 이용하여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세무기관에서 정하는 기한 및 요구에 따라 관련자료를 보존하고, 정기적으로 주관세무기관에 서면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제32조 납부할 세액이 없는 납세자도 납세기한 내에 규정에 따라 납세신고를 해야한다.

세액감면을 받는 납세자는 감면기간 내에 규정에 따라 납세신고를 해야한다.

제33조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신고 또는 원천징수납부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세종·세목, 납부세액 항목 또는 원천징수 항목, 세금산출근거, 공제항목 및 기준, 적용세율 또는 단위세액, 환급 항목 및 세액, 감면항목 및 세액, 납부할 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 납세연도, 납기연장세액, 체납세액, 가산금 등을 포함한다.

제34조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성실히 납세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개별상황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다음의 관련 증빙 또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재무회계보고서 및 부속서류
2. 납세관련 계약서, 협의서 및 증빙
3. 세무통제장치의 전자신고자료
4. 외지 경영활동 세무관리증명서 및 타 지역에서 완납한 세금에 관한 증빙서류
5. 국내 또는 국외 공증기관이 발급한 관련 증빙서류
6. 세무기관에서 지정하는 기타 관련서류 및 자료

제35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납부보고서를 사실대로 작성하고 합법적인 원천징수납부 관련 증빙, 세무기관이 규정한 기타 관련 증빙서 및 자료

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36조 정기적으로 정액을 납부하는 납세자는 간이신고 등의 납세신고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제37조 납기 내에 납세신고 또는 원천징수납부보고서 제출이 곤란하여 기한연장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는 규정기한 내에 세무기관에 서면으로 기한연장신청을 하고 세무기관의 승인을 얻어 승인기한 내에 처리하도록 한다.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납기 내에 납세신고 또는 원천징수납부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기한을 연장하여 처리토록 할 수 있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가 소멸한 후에는 지체 없이 세무기관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세무기관은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심사 승인한다.

제5장 세금징수

제38조 세무기관은 세금징수의 관리를 강화하고 책임제도를 확립한다.

세무기관은 세액 즉시 국고불입·납세자편의·징수비용 절감 등의 원칙에 근거한 세금징수방식을 확립한다.

세무기관은 수출환급 관리를 강화하고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국무원산하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39조 세무기관은 각종 세금, 가산금, 벌금을 국가가 정한 예산항목과 예산등급에 따라 즉시 국고 불입한다. 세무기관은 이를 가지고 있거나 유용 또는 횡령해서는 안 되며, 국고 또는 국가가 정한 세금계좌 이외의 계좌에 불입할 수 없다.

이미 국고에 납입한 세금, 가산금, 벌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관 및 개인도 임의로 예산항목과 예산등급을 변경할 수 없다.

제40조 세무기관은 편의·신속·안전을 원칙으로 하여 수표, 은행카드, 전자결제방식을 이용한 세금납부방식을 적극적으로 보급한다.

제41조 납세자가 다음 중 하나의 사유에 속할 경우, 세수징수관리법 제31조에 규정한 ‘특별히 곤란한 사유’에 해당한다.

1.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납세자가 비교적 큰 손실을 입어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 경우
2. 당해 기간 직원의 급료, 사회보험료를 공제한 후의 당기 자금이 납부할 세액에 부족한 경우

계획단열시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은 세수징수관리법 제31조 제2항의 승인권한을 참고하여 납세자의 세금납부기한 연장신청을 심사 승인할 수 있다.

제42조 세금납부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납부기한 만료 전에 신청해야 한다. 이때 세금납부기한 연장신청서, 당기 화폐자금 잔액현황 및 은행 예금계좌장부, 대차대조표, 직원의 급료 및 사회보험비 자료 등 세무기관이 지정하는 지출예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무기관은 세금납부기한 연장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세금납부기한 만료일부터 기산하여 가산금을 추가 징수한다.

제43조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 또는 법정심사승인기관의 세액감면 승인을 얻은 납세자는 관련서류를 지참하고 주관세무기관에서 세액감면 수속을 해야 한다. 감면기한이 만료되면 만료일 다음날부터 납세의무를 다시 이행한다.

감면특혜를 받은 납세자가 감면조건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감면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납세자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세무기관은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자에게 추징해야 한다.

제44조 세무기관은 효율적인 세수관리 및 납세편의 원칙에 의거, 국가관련규정에 따라 관련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게 소액 또는 원거리지역 세금의 대리징수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대리징수증서를 발급한다. 위탁을 받은 자 또는 기관은 위탁대리징수증서에 근거하여 세무기관 명의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납세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대리징수를 위탁받은 자 또는 기관은 지체 없이 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45조 세수징수관리법 제34조의 ‘납세완납증명서’란 각종 납세완납증, 납부증명서, 납입인지(印花稅票), 원천징수납세증빙 및 기타 세금완납증명서를 말한다.

세무기관이 지정하지 않은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납세완납증명서를 인쇄·제작할 수 없다. 또한 납세완납증명서는 전대, 전매, 변조 또는 위조할 수 없다.

납세완납증명의 서식 및 관리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정한다.

제46조 세무기관은 세금수령 후 납세자에게 납세완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은행에 세금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 세무기관은 은행에 납세완납증명서 발급을 위탁할 수 있다.

제47조 납세자가세수징수관리법 제35조 또는 제37조에서 열거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채택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정한다.

1. 당해 지역의 동종 업종 또는 유사 업종 중 경영규모와 수입수준이 비슷한 납세자의 세부담수준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2. 영업수입 또는 원가에 합리적인 비용과 이윤을 가산한 방식에 근거하여 정한다.
3. 원재료, 연료, 동력 등의 소모량에 근거하여 추정한다.
4. 기타 합리적 방법에 근거하여 정한다.

위에서 열거한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한 납부세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의 방법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세무기관이 적용하는 산정방법으로 산출된 납부세액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세무기관의 승인 하에 납부할 세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48조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신용등급 평가업무를 담당한다. 납세자의 납세 신용등급 평가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정한다.

제49조 수급인 또는 임차인이 독립적인 생산경영권을 갖고 재무상태를 독립 정산하며, 도급인 또는 임대인에게 정기적으로 도급대금 또는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임차인은 그 생산경영 수입 및 소득에 대해 납세하고 세무관리를 받아야 한다. 단, 법률이나 행정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도급인 또는 임대인은 도급 또는 임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인 또는 임차인의 관련상황을 주관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도급인 또는 임대

인이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도급인 또는 임대인은 수급인 또는 임차인과 함께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제50조 해산, 영업허가취소, 파산의 상황에 처한 납세자는 청산 전에 주관세무기관에 보고하고, 주관 세무기관이 결정한 세금을 정산 납부한다.

제51조 세수징수관리법 제36조의 ‘관련기업’이란 다음에 열거한 관계 중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을 말한다.

1. 자금, 경영, 구입·판매 등의 분야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관계가 존재
2.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3자에게 소유 또는 지배
3. 이익상 상호 관련된 기타 관계

납세자는 관련기업과의 업무거래에 대해 당해 지역 세무기관에 가격, 비용 기준 등의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정한다.

제52조 세수징수관리법 제36조의 ‘독립기업간의 거래’란 상호 관련이 없는 기업 간에 공정한 시장거래가격 및 영업관계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거래를 말한다.

제53조 납세자는 주관세무기관에 관련기업과의 업무거래에서 이루어지는 가격책정원칙과 계산방법을 제출하고, 주관세무기관의 심의·승인을 받은 후, 주관세무기관이 사전에 납세자와 가격책정과 관련된 사항을 약정하고, 납세자의 시행여부를 감독할 수 있다.

제54조 납세자와 관련기업간의 업무거래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그 납부할 세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구매 및 판매 시 독립기업 간 업무거래에 근거하지 않고 가격을 책정한 경우
2. 자금융통 시 지급 또는 수취하는 이자가 독립기업 간에 거래되는 이자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동종 업종 간 정상이율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3. 용역을 제공할 때 독립기업 간 업무거래에 근거하지 않고 용역대가를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경우
4. 재산의 양도 또는 재산사용권의 제공 시에 독립기업 간 업무거래에 근거하지 않은 가격책정이나 비용의 수취 또는 지급
5. 기타 독립기업 간의 업무거래에 근거하여 가격을 책정하지 않는 경우

제55조 납세자가 본 세칙 제54조에서 열거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다음 방법에 따라 과세수입금액 또는 과세소득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독립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동일 또는 유사 업무활동에 근거한 가격
2.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재판매한 가격에 근거하여 수취한 수입 및 이윤수준
3. 원가에 합리적인 비용과 이윤을 가산
4. 기타 합리적 방법

제56조 납세자와 그 관련기업이 독립기업 간 업무거래에 근거하지 않는 대금 및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당해 업무거래가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3년 이내에 조정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거래가 발생한 당해 과세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조정할 수 있다.

제57조 세수징수관리법 제37조의 ‘규정대로 세무등기를 하지 않고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란 외지에서 생산 경영활동에 종사하면서 영업지 세무기관에 등기신고를 하지 않는 납세자를 말한다.

제58조 세무기관이 세수징수관리법 제37조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상품, 화물을 압류했을 경우, 납세자는 압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압류물건이 신선도를 중시하는 상품이거나 쉽게 부패 또는 가치가 상실되는 상품·재화인 경우, 세무기관은 압류물건의 유통기한에 근거하여 전항에 규정된 압류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제59조 세수징수관리법 제38조, 제40조의 ‘기타 재산’이란 납세자의 주택, 현금, 유가증권 등의 부동산과 동산을 포함한다.

차량, 금은장신구, 골동품, 서화, 호화주택 또는 한 채 이외의 주택은 세수징수관리법 제38조, 제40조, 제42조에서 규정한 ‘개인 및 부양가족의 생활유지에 필요한 주택 및 생활용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세무기관은 단가 5,000위엔 이하의 기타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세수보전조치 및 강제집행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제60조 세수징수관리법 제38조, 제40조, 제42조의 ‘개인이 부양하는 가족’이란 납세자와 동거하는 배우자, 직계친속 및 생활수입원이 없어 납세자가

부양하는 기타 친족을 말한다.

제61조 세수징수관리법 제38조, 제88조의 ‘담보’란 세무기관이 인정하는 납세보증인이 납세자를 위해 제공하는 납세보증과 납세자 또는 제3자가 담보물권이 전혀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설정된 재산을 담보 제공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납세보증인이란 중국 내에서 납세담보 능력을 갖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경제조직을 말한다.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하는 담보자격이 없는 단위와 개인은 납세보증인이 될 수 없다.

제62조 납세자를 위한 납세담보제공에 동의하는 납세보증인은 납세담보서를 작성하고 담보대상, 담보범위, 담보기한, 담보책임 및 기타 관련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납세담보서는 납세자와 납세보증인의 서명날인 및 세무기관의 동의를 있어야 비로소 효력을 갖는다.

재산으로 납세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납세자 또는 제3자는 재산명세서를 작성하고 재산가치 및 기타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납세담보 재산명세서는 납세자 또는 제3자의 서명날인과 세무기관의 확인이 있어야 비로소 효력을 갖는다.

제63조 세무기관이 상품, 재화 및 기타 재산을 압류 봉인할 경우는 반드시 두 명 이상의 세무공무원이 집행해야 하며, 피집행자에게 사전 통지해야 한다. 피집행자가 자연인일 경우, 세무기관은 본인 또는 성인가족에게 사전 통지하여 현장에 입회하도록 한다. 피집행자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일 경우에는 그 법정대표 또는 주요책임자에게 사전 통지하여 현장에 입회하도록 한다. 피집행자가 입회를 거부하더라도 압류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64조 세수징수관리법 제37조, 제38조, 제40조 규정에 따라 압류 봉인한 상품, 재화 또는 기타재산의 가치가 납부세액에 상당할 경우, 세무기관은 동종 상품의 시장가격, 공장출하가격 또는 평가가격을 참고하여 그 가치를 추산한다.

세무기관이 전 항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상품, 재화 및 기타 재산의 가치를 책정할 경우, 가산금과 압류, 봉인, 보관, 경매, 매각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포함해야 한다.

제65조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이 다른 강제처분 가능한

재산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세무기관은 그 가치가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지
만 분할할 수 없는 상품, 화물 또는 기타 재산에 대해서도 전체를 압류,
봉인, 경매 처분할 수 있다. 세무기관은 경매대금으로 세액, 가산금, 벌금
및 압류, 봉인, 보관, 경매에 소요된 비용을 변제할 수 있다.

제66조 세수징수관리법 제37조, 제38조, 제40조 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이 압
류 봉인하는 경우, 소유권증명이 있는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당사
자에게 소유권증명을 세무기관에 제출하여 보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때 관련기관에 집행협조를 요청하는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관련기관은
압류·봉인 기간 중에는 당해 동산 또는 부동산의 명의변경수속을 할 수
없다.

제67조 세무기관은 피집행자에게 압류 봉인된 상품과 재화, 기타 재산에 대
한 보관책임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집행자는 보관관리의 책임을
진다.

봉인된 재산이 계속 사용해도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않으면 세무기관은 피
집행자가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피집행자가 보관 또는 사용중의 잘못
으로 손실을 입히는 경우 피집행자가 책임을 진다.

제68조 납세보전조치를 취한 후, 세무기관이 지정한 기한 내에 납세자가 세
액을 납부하면 세무기관은 납부일 또는 은행에서 회신한 세금납부증빙 접수
일로부터 1일 이내에 납세보전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제69조 세무기관이 압류 봉인한 상품, 재화 또는 기타 재산을 처분하여 세액
을 변제하고자 할 경우, 합법적인 경매기관에 위탁해야 한다. 경매를 위탁
할 수 없거나 경매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지 상업기업에게 위탁하
여 판매하거나 납세자에게 기한 내에 처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상업기
업에 위탁 판매가 불가능하거나 납세자가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세무기관
은 이를 시가로 처분할 수 있는 바, 그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정한다. 국가가 자유매매를 금지하는 상품은 관련 단위가 국가가 정한 가
격으로 구매해야 한다.

경매대금 또는 시가처분액에서 세액, 가산금, 벌금 및 압류, 봉인, 보관, 경
매, 시가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제하고 남은 금액은 3일 이내에 피
집행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70조 세수징수관리법 제39조, 제43조의 ‘손실’이란 세무기관의 책임으로 인

해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의 합법적인 이익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힌 것을 말한다.

제71조 세수징수관리법상의 ‘기타 금융기관’이란 신탁투자회사, 신용합작회사, 우체국저축기구 및 중국인민은행과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기타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72조 세수징수관리법상의 ‘저축’이란 독자기업의 투자자, 합자기업의 동업자, 개인사업자의 저축 및 주주계좌의 자금 등을 말한다.

제73조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정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납세보증인이 지정 기한 내에 보증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세무기관은 기한을 정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세금의 납부를 명령할 수 있다. 이때 그 납부기한은 최장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74조 세금체납자 또는 그 법정 대표자가 출국 전 규정에 따라 납부할 세액,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았거나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세무기관은 출입국관리기관에 이를 통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출국금지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세무총국과 공안부가 정한다.

제75조 세수징수관리법 제32조에서 규정한 가산금징수의 기산·종료일은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 또는 세무기관이 법률 및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확정된 납부기한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실제로 납부한 날 종료한다.

제76조 현(縣)급 이상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체납 현황을 세무업무 처리장소 또는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월간지, 인터넷 등 언론매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고한다.

납세자 체납현황을 정기 공고하는 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정한다.

제77조 세수징수관리법 제49조의 ‘체납액이 비교적 많다’라고 함은 미납액이 5만위엔 이상임을 말한다.

제78조 세무기관은 납세자가 세액을 과다 납부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납세자가 스스로 과다 납부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환

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하여 반환해야 한다.

세수징수관리법 제51조의 ‘동 기간의 은행예금이자를 가산한 과다납부세액의 환급’에는 예정납부로 인한 확정환급, 수출환급 및 각종 감면환급을 포함하지 않는다.

환급이자는 세무기관의 환급업무 처리당일 중국인민은행이 공시하는 당좌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79조 납세자에게 환급액과 체납액이 동시에 있는 경우, 세무기관은 환급액과 이자에서 체납액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한다.

제80조 세수징수관리법 제52조의 ‘세무기관의 책임’이란 세무기관이 세수법을 및 행정법규를 부당하게 적용했거나 법 집행이 위법한 것을 말한다.

제81조 세수징수관리법 제52조의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계산착오 등 실책’이란 고의성이 없는 계산공식 적용착오 및 표기상의 과실을 말한다.

제82조 세수징수관리법 제52조의 ‘특수한 상황’이란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계산착오 등의 실수로 미납 또는 과소납부,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적게 징수한 세액의 누계액수가 10만위엔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83 조 세수징수관리법 제52조에서 규정한 추가납부 및 추정세액, 가산금의 납부기한은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미납금 또는 과소납부액을 납부해야 할 날부터 계산한다.

제84조 세무기관은 회계감사기관 또는 재정기관이 법에 근거한 회계감사를 통해 세무기관의 세수위법행위에 대해 내린 결정을 집행해야 한다. 피감사기관의 세수위법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당해 기관에 결정의견서를 시달하고 세무기관에 납부할 세액과 가산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한다. 세무기관은 관련기관의 결정의견서에 근거, 세수법률 및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징수해야 할 세액과 가산금을 세수징수관리범위 및 예산항목에 따라 국고 불입한다.

세무기관은 회계감사기관 또는 재정기관의 결정의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집행상황을 서면으로 회신한다.

관련기관이 직무이행 과정 중 발견한 세금, 가산금을 임의로 징수하여 국고에 불입 또는 기타 항목으로 임의처리하거나 가지고 있어서는 안된다.

제6장 세무조사

제85조 세무기관은 과학적인 조사제도를 확립하고 전체적인 조사업무를 기획한다. 또한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조사회수(檢査次數)를 엄격히 관리한다.

세무기관은 합리적인 세무조사업무시스템을 확립하고 조사대상선정, 조사, 심리, 집행 담당직원간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정하여, 상호 업무를 독립시킴으로써 조사대상선정 및 조사업무를 규범화해야한다.

세무조사의 구체적인 지침은 국가세무총국이 정한다.

제86조 세무기관이 세수징수관리법제 54조 제1항에 정한 직권을 행사하는 경우,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영업장소에서 그 직무를 수행한다. 필요할 경우는 현(縣) 이상 세무국장의 동의를 얻어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이전 과세연도 회계장부, 기장증빙, 결산보고서 및 기타 관련자료를 세무기관으로 영치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때 세무기관은 반드시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영치서류 명세서를 발급하고 3개월 이내에 모두 반환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인 때에는 세무기관이 시²⁰⁾, 자치주 이상 세무국장의 동의를 얻어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당해 연도 회계장부, 기장증빙, 결산보고서 및 기타 관련자료를 세무기관으로 영치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30일 이내에 자료를 반환해야 한다.

제87조 세수징수관리법 제54조 제6항에 따라 세무기관이 직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담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담당토록 하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양식의 예금계좌조사 허가증명서에 근거하여 조사를 진행하되, 피조사자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예금계좌조사 허가증명서 양식은 국가세무총국이 정한다.

세무기관이 조회하는 내용은 납세자의 예금계좌잔액 및 거래내역현황을 포함한다.

제88조 세수징수관리법 제55조 규정에 따른 세무기관의 세수보전조치 기한은 일반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사안이 중대하여 기한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 구(區)가 설정되어 있는 시임.

제89조 세무기관과 세무공무원은 세수징수관리법 및 본 세칙 규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해야한다.

세무조사에 임하는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증과 세무조사통지서를 제시해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증과 세무조사통지서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및 기타 당사자는 조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세무기관은 집단상가(集貿市場)나 업소밀집지역을 조사할 때는 동일한 세무조사통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세무조사증과 세무조사통지서의 양식,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은 국가세무총국이 정한다.

제7장 법률책임

제90조 규정에 따라 세무등기증 검열 또는 변경수속을 하지 않는 납세자에 대해 세무기관은 지정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2000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2000위엔 이상 1만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91조 세무기관은 불법으로 납세완납증빙을 인쇄, 전대, 전매, 변조 또는 위조한 자에게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2000위엔 이상 1만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1만위엔 이상 5만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92조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이 세수징수관리법에 따라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의 예금계좌에 세무등기번호를 등재하지 않았거나 세무등기증에 납세자의 계좌번호를 등재하지 않았을 경우, 세무기관은 지정된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2,000위엔 이상 2만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2만위엔 이상 5만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93조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불법으로 은행계좌, 영수증, 증명서 또는 기타 편의를 제공하여 무납부·과소납부 또는 환급금 편취를 방조한 경우, 세무기관은 그 불법소득을 몰수하는 외에 무납부, 과소납부 또는 편취한 세액의 1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94조 납세자가 원천징수를 거부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무기관에 이를 보고하고 세무기관은 직접 납세자에게 세금 및 가산금을 징수한다. 납세자가 납부를 거부할 때는 세수징수관리법 제68조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95조 세무기관이 세수징수관리법 제5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철도역, 부두, 공항, 우정(郵政)기업 및 그 지점에서 납세자의 납세 관련상황을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기관이 거절하였을 경우, 세무기관은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1만원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1만원엔 이상 5만원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96조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수징수관리법 제70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허위자료를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 제공 또는 관련자료의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
2. 세무기관이 안건과 관련한 상황 및 자료를 기록, 녹음, 녹화, 사진촬영, 복제하는 것을 거부 또는 저지하는 경우
3. 조사기간 중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가 관련 자료를 이전, 은닉, 훼손하는 경우
4. 법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등 기타의 경우

제97조 세무공무원이 압류·봉인한 상품, 재화 또는 기타 재산을 사취함으로써 심각한 범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한다.

제98조 세무대리인이 세수법률 및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미납 또는 과소납부하도록 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 및 가산금을 납부하는 것 외에 세무대리인도 미납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50%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납부해야한다.

제99조 세무기관이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및 기타 당사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소득을 몰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벌금·몰수 증명서를 발부해야 한다. 세무기관이 벌금·몰수 증명서를 발부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및 기타 당사자는 납부를 거부할 수 있다.

제100조 세수징수관리법 제88조의 ‘납세쟁의’란 세무기관이 확정된 납세주체, 과세대상, 과세범위, 감면 및 환급, 적용세율, 과세근거, 납세단계, 납세기한, 납세장소 및 세금징수방식 등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납세자, 원천징수납부의무자, 납세보증인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발생하는 쟁의를 말한다.

제8장 문서송달(文書送達)

제101조 세무기관은 세무 문서를 수령인에게 직접 송달해야 한다.

수령인이 자연인일 경우,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하고 수령해야 한다. 본인이 부재중일 경우, 성인인 동거가족이 서명하고 수령한다.

수령인이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일 경우에는 법인의 법정대표자, 기타 단체의 주요책임자 또는 당해 법인 및 단체의 재무담당자, 문서접수책임자가 서명하고 수령한다. 수령인에게 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그 대리인이 서명하고 수령할 수 있다.

제102조 수령인 또는 본 세칙에서 지정한 기타 수령인이 세무 문서의 수령 확인서에 수취일자를 명기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을 송달이라고 한다.

제103조 수령인 또는 본 세칙에서 지정한 기타 수령인이 세무 문서에 서명 날인을 거절할 경우, 송달인은 수령확인서에 거절사유와 일자를 명시하고 송달인과 증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당해 세무문서를 수령인이 있는 곳에 남겨두면 문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4조 세무 문서를 직접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기업에 위탁하여 송달하거나 우편 발송할 수 있다.

제105조 세무 문서를 직접 또는 위탁 송달하는 경우, 수령인 또는 증인이 수령 확인서에 서명한 날이나 기재된 수취일자가 송달일이다. 우편송달의 경우에는 우편접수 영수증에 기재된 날짜를 세무문서의 송달일자로 간주한다.

제106조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세무문서를 공시 송달할 수 있다. 공시일로부터 만 30일이 지나면 문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1. 동일한 송달 사항을 접수할 수령인이 많은 경우
2. 본 장에서 규정한 기타 송달방식으로는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제107조 세무문서 양식은 국가세무총국이 정한다. 본 세칙의 ‘세무문서’란 다음을 포함한다.

1. 세무사항통지서
2. 지정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는 통지서
3. 세수보전조치결정서
4. 세수강제집행결정서
5. 세무조사통지서
6. 세무처리결정서
7. 세무행정처벌결정서
8. 세무행정재심결정서
9. 기타세무문서

제9장 부 칙

제108조 세수징수관리법 및 본 세칙에서 말하는 ‘이상’, ‘이하’, ‘일내’, ‘만기’는 그 수를 포함한다.

제109조 세수징수관리법 및 본 세칙에서 정한 기한의 말일이 법정 공휴일인 경우, 법정 공휴일 만료일의 다음날을 기한의 말일로 한다. 기한 내에 법정 공휴일이 3일 이상 있을 경우, 그 휴일일수만큼 기한을 연장한다.

제110조 세수징수관리법 제30조 제3항에서 규정한 원천징수 수수료는 예산 관리항목에 산입, 세무기관이 법률 및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지급한다.

제111조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대리인에게 위탁하여 세무업무 처리를 대리하게 하는 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정한다.

제112조 경지점용세, 계세, 농업세, 목축업세의 징수관리는 국무원의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13조 본 세칙은 2002년 10월 15일 부로 시행한다. 1993년 8월 4일 국무원이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실시세칙」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상표법 실시조례』의 주요 내용

- 『상표법 실시조례』는 상표권 보호 및 상표의 신용을 유지함으로써 소비자와 경영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2002년 9월 15일 부로 개정 시행함
 - 『상표법』(中華人民共和國商標法)은 1982년 제정된 후 1993년 1차 개정을 거쳐 2001년 10월 27일 부로 개정 시행

- 상표 등록 출원 및 종류
 - 출원기관 :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 상표국
 - 종류 : 상품상표, 서비스상표, 단체상표, 증명상표 등
 -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중국에 상표등록을 출원할 경우 : 소속국가와 중국과 체결한 합의, 상호 가입한 국제조약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며 국가가 인가하는 상표대리 자격을 갖춘 대리기구(agency)에 위탁 처리해야 함

- 등록상표 갱신, 양도 및 사용 허가
 - 등록상표의 유효기간 : 해당 상표의 등록일로부터 10년임
 - 등록상표 갱신 : 유효기간 완료 후에도 사용이 가능하나 등록 상표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반드시 갱신 등록출원을 해야함(매 회 갱신등록의 유효기간은 10년임)
 - 등록상표 양도 : 양도인과 양수인간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상표국에 신청해야 함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실시조례 (中華人民共和國商標法實施條例)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58호 (2002년 9월 15일부 시행)

제1장 총 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이하 "상표법"이라 약칭함)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상 유관상품상표의 규정은 서비스상표에 적용한다.

제3조 상표법과 본 조례에서 말하는 상표의 사용은 상품, 상품포장 또는 상품용기 및 상품교역문서 사용되는 상표 또는 광고선전, 전시 및 기타 상업 활동 중 사용되는 상표를 포함한다.

제4조 상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국가규정필수사용등록상품은 법률, 행정법 규상 규정한 필수사용등록상표의 상품을 말한다.

제5조 상표법과 본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상표등록 및 상표심사과정 중 쟁의가 발생할 시 유관당사자가 해당상표가 유명상표의 구성여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상표국 또는 상표심사위원회에 유명상표의 인정신청과 상표법 제13조 규정의 상표등록신청위반의 기각신청 또는 상표법 제13조 규정의 상표등록위반의 철회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유관당사자는 신청제출 시 기 상표가 유명상표를 구성한다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국 상표심사위원회는 당사자의 요청에 근거, 사실여부심사의 기초 하에 상표법 제14조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상표의 유명상표구성여부를 인증한다.

제6조 상표법 제16조 규정의 지리표시는 상표법과 본 조례규정에 의거하여 증명상표 또는 단체상표신청등록의 등록사항이 된다. 지리표시를 증명상표의 등록사항으로 할 경우, 기 상품이 해당지리표시조건에 부합되어 사용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해당증명상표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증명상표를 통제하는 조직은 이를 인가하여야만 한다. 지리표시를 단체상표의 등록사항으로 할 경우, 기 상품이 해당지리표시조건에 부합되어

사용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해당지리표시가 단체상표등록사항이 되는 단체, 협회, 또는 기타 조직의 참가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당단체, 협회 또는 기타 조직은 장정의 적용에 의거하여 회원이 된다. 해당지리표시가 단체상표의 등록사항이 되는 단체, 협회, 또는 기타 조직의 참가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도 해당지리표시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해당단체, 협회 또는 기타 조직이 지리표시를 금지할 권리는 없다.

제7조 당사자가 위임한 대리조직이 상표등록 또는 기타사항을 처리하는 경우 대리조직은 대리위임장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위임장에는 대리내용 및 권한이 기재되어야 하며,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의 대리위임장에는 위탁인의 국적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의 대리위임장 및 기타문서는 반드시 공정, 인정수속, 대조 등 원칙에 입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상표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란 중국 내에서 고정거주 또는 고정영업장소가 없는 외국인 및 외국기업을 의미한다.

제8조 상표등록 또는 기타 행정 수속시 반드시 중문을 사용하여야 한다. 상표법과 본 조례에 의거한 각종 증빙증명서류 및 증거자료가 외국어로 된 경우에는 반드시 중문번역문을 첨부해야 한다. 미 첨부 시 이미 제출된 해당증빙, 증명서류 또는 증거자료는 미제출로 간주한다.

제9조 상표국, 상표심사위원회의 담당자는 아래상황에 해당할 경우 해당건을 회피하여야 한다.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회피를 요청할 수 있다.

1. 담당자가 당사자 또는 당사자대리인의 친인척일 경우
2. 당사자 또는 대리인과 기타관련이 있어 공정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3. 상표등록신청 또는 기타상표사무수속과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제10조 본 조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상표국 또는 상표심사위원회에 해당문서를 직접 제출했을 때는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고, 우편접수는 우편소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소인일이 불분명 또는 소인일이 없을 경우에는 상표국 또는 상표심사위원회가 접수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단, 당사자가 실제 소인증명을 제출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상표국 또는 상표심사위원회의 각종 문건은 우편, 직접전달 또는 기

타방식에 의해 당사자에게 송부할 수 있다. 당사자가 대리조직에 위임할 경우에는 대리조직으로의 송부를 당사자에 송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상표국 또는 상표심사위원회가 당사자에게 각종 문건을 송부한 날짜는 우편일 경우 당사자가 접수한 우편소인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소인일이 불분명 또는 없을 경우에는 문건 발송 후 15일 경과 시 당사자에게 송부된 것으로 간주한다. 직접 전달일 경우에는 전달일을 기준으로 한다. 문건이 우편 또는 직접 전달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고를 통하여 당사자에게 전달할 수 있고, 공고 30일 이후에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 국제상표등록은 중국이 가입한 유관국제조약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구체절차는 국무원공상관리부문의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상표등록신청

제13조 상표등록 신청 시 공표된 상품과 서비스 분류 표에 근거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매 1건 상표등록 신청 시 <상표등록신청서> 1부, 상표도안 5부를 상표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색을 지정한 경우에는 색채도안 5부, 흑백도안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도안은 명료, 집착이 용이하며 매끄럽고 내구성이 있는 용지에 인쇄한 것 또는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고, 길이와 폭은 5mm 이상 10mm 이내여야 한다. 3차원 입체표지를 등록상표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3차원 입체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도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색 조합한 상표를 등록한 경우에는 신청서에 명기 및 설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체상표, 증명상표를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주최자격증명서류와 사용관리규칙을 첨부하여야 한다. 상표가 외국어, 또는 외국어를 포함한 경우에는 의미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4조 상표등록 신청시 신청인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유효문건의 복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등록신청인의 명의를 제출한 신분증과 일치하여야 한다.

제15조 상품명칭 또는 서비스항목은 상품과 서비스 분류 표에 의거한다. 상품 및 서비스 분류 표에 예시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질에 관한 설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등록 신청 등 유관문건은 타자 또는 인쇄형식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16조 동일상표를 공동 신청한 경우 신청서 상에 대표인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대표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 중 신청자 배열 순서상 첫 기재인을 대표인으로 한다.

제17조 신청자가 명의, 주소, 대리인의 변경 또는 지정된 상품의 삭제를 요구할 경우 상표국에 변경수속을 할 수 있다. 신청인이 상표등록의 양도신청 할 경우 상표국에 양도수속을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 상표등록의 신청기간은 상표국에 신청문건이 도착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신청수속완비 및 규정에 적합하게 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상표국은 접수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신청수속이 미비하거나 규정에 부적합하게 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상표국은 접수하지 않으며 신청인에게 접수불가 사유를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신청수속이 기본상 구비완비 또는 신청서류기본규정에는 부합되나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표국은 당사자에게 보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해당기한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규정에 입각하여 보정 후 상표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규정기간내 보정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기한을 보류한다. 기한내 보정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포기로 간주하며, 상표국은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양자 또는 양자이상의 신청인이 동일상품 또는 유사상품을 각자 동일한 또는 유사한 상표로 동일한 날짜에 신청 등록할 경우, 각 신청인은 상표국으로부터 통지 받은 30일 이내에 신청한 상표를 우선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일날짜사용 또는 균등 미사용시 각 신청인은 상표국으로부터 통지 받은 30일 이내에 자체 협상을 진행하고 상표국에 협의내용을 서면 전달한다. 협의를 원치 않거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시에는 상표국은 추첨으로 한 명의 등록인을 확정하고 기타신청인의 등록신청은 기각됨을 통지한다. 상표국은 통지하였으나 추첨에 참가하지 않은 신청인은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상표국은 추첨에 참가하지 않은 신청인에게 서면 통보한다.

제20조 상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하여 우선권을 요구할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제1차 상표등록 신청문건 부분은 해당신청을 수리한 상표주관기관의 증명을 경유하여야 하며, 신청일자 및 신청번호를 명기하여야 한다. 상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하여 우선권을 요구할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증명

문건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상 규정된 기구인증을 경유하여야 한다. 중국영내에서 개최된 국제전람회의 전시상품은 예외로 한다.

제3장 상표등록신청 및 심사

제21조 상표국은 접수한 상표등록 신청에 대하여 상표법 및 본 조례의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규정에 부합한 경우 또는 부분지정상품상 사용상표의 등록신청이 규정에 부합될 경우 임시 등록 및 공고한다.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또는 부분지정상품상 사용상표의 등록신청이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기각 또는 부분지정상품상 사용상표의 등록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에게 이유를 서면 통지한다. 상표국이 지정 상품상 사용상품의 등록신청에 대하여 임시 등록한 경우, 신청인은 이의 제출일 만료 전에 부분지정상품상 사용상표의 등록신청의 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이 부분지정상품상 사용상표의 등록신청을 포기한 경우 상표국은 임시등록을 철회하고 심사절차를 중단하며 재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상표국에 임시 등록 후 공고한 상표에 대해 이의를 제출한 경우 이의신청인은 상표국에 상표이의서 1식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이의서는 피이의 상표가 등재된 <상표공고>의 호수 및 임시등록번호를 명기하여야 한다. 상표이의서는 명백한 요구와 사실에 의거하여야 하며 유관증거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상표국은 상표이의서 부분을 조속히 피이의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상표이의서 부분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피이의인이 답변하지 않을 경우시 상표국의 이의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사자가 이의신청 제기 또는 답변 후 유관증거자료 보정을 요구할 경우 신청서 또는 답변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신청서 또는 답변서 제출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한 내 미제출시 당사자가 유관증거자료 보정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3조 상표법 제34조 제2항에 의거한 이의성립은 부분지정상품상의 성립을 포함한다. 부분지정상품상 성립된 이의 및 해당 부분지정상품상의 상표등록 신청이의는 비준할 수 없다.

이의재정에서 피이의 상표가 효력을 상실했을 경우 이미 공고된 상표의 공고는 취소되고 이의조정에서 비준된 상표가 재공고 된다. 이의조정 비준 등록을 거친 상품은 해당상표 이의 신청일부터 이의조정 효력발생 전까지의 기한 동안 타인의 동일종 또는 유사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사용으로 인한 권리침해에 대하여 소급해서 대항할 수 없다. 단, 사용인의 악의에 의해서 상표등록인에게 조성된 손실은 배상하여야 한다. 이의재정에서 비준된 등록상표의 효력은 상표이의재정공고일자로부터 기산된다.

제4장 등록상표의 변경, 양도, 연장

제24조 상표등록인의 명의, 주소 또는 기타등록사항을 변경할 경우 상표국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국은 비준 후 상표등록인에게 해당증명을 교부하고 공고한다. 비준을 거부할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이유를 통보한다. 상표등록인의 명의를 변경할 경우 유관 등기기관이 제출한 변경증명문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증명문건을 미제출시 신청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충하여 제출할 수 있다. 기한 내에 미제출시 변경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표국은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상표등록인의 명의 또는 주소를 변경할 경우 상표등록인은 상표등록을 일괄 변경하여야 한다. 만약 일괄변경하지 않을 경우 변경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표국은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한다.

제25조 등록상표 양도시 양도인과 양수인은 상표국에 상표등록 양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도등록상표 수속은 양수인에 의해 진행된다. 상표국은 양도등록상표신청의 비준 후 양수인에게 해당증명을 발급 및 공고한다. 등록상표 양도시 상표등록인은 동일 종 또는 유사 상품에 등록된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일괄 양도한다. 일괄하지 않으면 상표국은 개정기간을 통지한다. 기간 내에 개정하지 않으면 등록상표의 양도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표국은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한다. 오인, 혼동할 수 있거나 기타불량영향을 미치는 등록상표의 양도 신청시 상표국은 반드시 비준하지 않아야 하며 신청인에게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상표등록전용권이 상표양도 이외의 기타 사유로 이전될 때 상표등록 전용권을 이전 받는 당사자는 유관증명문건 또는 법률문서를 상표국에 제출하고 상표전용권 전이수속을 진행한다. 상표전용권 이전의 등록은 상표전용권 등록자의 동종 또는 유사 상품상의 등록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일괄 전이한다. 만약 일괄전이하지 않을 경우 상표국은 개정기간을 통지하고 기간 내에 개정하지 않을 시에는 상표등록전이양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한다.

제27조 상표등록의 연장등록이 필요한 경우 상표국에 상표연장등록신청서를 제

출한다. 상표국은 상표등록연장신청 비준 후 증명을 발급하고 공고한다. 상표등록연장의 유효기간은 상표등록의 제1차 유효만기일을 기점으로 한다.

제5장 상표심사

제28조 상표심사위원회는 상표법 제32조, 제33조, 제41조, 제4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출된 상표신청을 심사한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사실과 법에 근거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제29조 상표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한 등록상표의 쟁의는 기존 상표등록자가 타인이 동일 또는 유사 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신청한다고 인정될 경우를 말한다.

제30조 상표신청심사는 상표심사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대당사자의 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함께 제출한다. 상표국의 결정서 또는 재정서에 대한 재심 신청 시에는 상표국의 결정서 또는 재정서 부분을 동시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국심사위원회는 신청서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수리조건에 부합되면 수리한다. 수리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수리하지 않으며 신청인에게 이유를 서면 통지한다. 보정이 필요한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정 요구를 통보한다. 보정을 경유했음에도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면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을 수리하지 않으며 신청인에게 이유를 서면 통지한다. 기간 내에 미보정시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고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한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상표심사신청을 수리한 후에 수리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수리를 철회하고 신청인에게 이유를 서면 통지한다.

제31조 상표심사위원회는 상표심사신청수리 후 조속히 신청서 부분을 상대당사자에게 송부하고 당사자는 신청서 부분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답변하지 않을 시에도 상표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32조 당사자가 심사신청서 제출 또는 답변 후에 유관증거자료의 보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서 또는 답변서 중에 기재하고 신청서 또는 답변서를 제출한 3개월 이내에 제출한다.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유관증명자료의 보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3조 상표심사위원회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실제수요에 근거하여 신청심사의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심사신청을 공개적으로 신청할 것을 결정한 후 공개심사 15일 전 당사자에게 공개심사날짜, 장소, 심사위원의 고지를 통보한다. 당사자는 통지서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답변한다. 신청인이 답변하지 않고 공개심사에 출석하지 않으면 심사신청은 철회한 것으로 간주,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한다. 피신청인이 답변하지 않고 공개심판에 불참할 경우, 상표심사위원회는 결석심사 할 수 있다.

제34조 신청인이 상표심사위원회의 결정, 재정 전에 신청철회를 요구할 경우에는 상표심사 위원회에 이유를 통지하고 철회할 수 있다. 철회신청에 의하여 심사과정은 종료한다.

제35조 신청인이 상표심사 신청을 철회할 경우 동일한 사실 또는 이유로 재차 심사신청을 제출할 수 없다. 상표심사위원회가 이미 재정 또는 결정한 신청에 대하여 동일한 사실 또는 이유로 재차 심사신청을 할 수 없다.

제36조 상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취소된 상표등록은 기 상표전용권이 취소된 시점에서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유관철회상표등록의 결정 또는 재정은 철회 전 법원의 행위 및 기집행된 상표권침해안건의 판결재정, 공상행정관리부문의 행위 및 기집행된 상표권리침해안건의 처리 결정과 이미 이행된 상표양도 또는 사용허가 계약에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단, 상표 등록인의 악의에 의해서 타인에게 조성된 손실은 배상하여야 한다.

제6장 상표사용 관리

제37조 등록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상품, 상품포장, 설명서 또는 기타 부속 물상에 등록상표 또는 등록표기로 명시할 수 있다. 등록표기는 (注)와 (R)을 포함한다. 등록표기를 사용시 반드시 상표의 우측상단이나 우측하단에 표기한다.

제38조 <상표등록증>의 유실 또는 파손한 자는 반드시 상표국에 추가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상표등록증>을 유실한 경우 <상표공고>상에 유실성명을 게재한다. 파손된 <상표등록증>은 반드시 추가 발급신청서를 제출시

상표국에 반납한다. 상표등록증을 위조 혹은 변조한 자는 국가기관증명서 위조, 변조죄에 관한 형법 혹은 기타죄의 규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9조 상표법 제44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는 상표등록인에게 기한 내에 개정하도록 명령한다. 개정 거부시 상표국에 해당등록상표를 취소하도록 요청한다. 상표법 제44조 제4항의 행위에 해당할 경우 상표국에 해당등록상표를 취소하도록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상황을 설명한다. 상표국은 반드시 상표등록인에게 통지하며 상표등록인은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철회신청제출전의 증거자료 또는 정당한 사유를 제출한다. 기간 내에 증거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증거자료가 무효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표국은 해당등록상표를 취소한다. 앞 조항에서 언급된 증거자료는 상표등록인이 등록상표를 사용한 증거자료와 상표등록인이 타인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하도록 허가한 증거자료를 포함한다.

제40조 상표법 제44조, 제4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철회된 등록상표는 상표국을 통하여 공고한다. 해당등록상표의 전용권은 상표국이 철회를 결정한 날로부터 소멸된다.

제41조 상표국, 상표평가심사위원회가 등록상표를 철회할 경우 철회사유는 부분특정상품에만 한정되고 해당부분 지정상품상 사용된 상표등록이 철회된다.

제42조 상표법 제42조,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벌금액은 불법경영액의 20%이하 또는 불법행위로 획득한 이익의 2배 이하로 추징한다. 상표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벌금액은 불법경영액의 10%이하로 추징한다.

제43조 제삼자에게 해당등록상표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허가인이 상표사용허가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서사본을 상표국에 제출한다.

제44조 상표법 제40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지정 기한 내에 개정할 것을 명한다. 기한 내 개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상표 표식을 몰수한다. 상표 표식과 상품이 분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몰수 폐기한다.

제45조 상표사용이 상표법 제13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유관당사자가 공상행정관리부를 통하여 상표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가 신청을 제출할 시 기상표가 기존상표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한다. 상표국이 상표법 제14조 규정에 의거하여 기존상표의 이익을 인정할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상표권 침해자에게 상표법 제13조에 규정한 기존상표권리위반 행위의 정지를 명하고 상표 표식을 몰수 폐기한다. 상표 표식과 상품이 분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몰수 폐기한다.

제46조 상표등록인이 등록상표나 부분지정상품의 상표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상표국에 상표취소신청서를 제출하고 상표등록증 원본을 반환한다. 상표등록인이 해당등록상표나 부분지정상품의 상표등록을 취소할 경우 해당등록상표의 전용권 또는 해당부분지정상품상의 등록상표 전용권의 효력은 상표국이 취소신청을 접수한 일자로 소멸된다.

제47조 상표등록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등록상표를 이전등록하지 않은 경우 누구라도 상표국에 상표등록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등록신청자는 상표등록인의 사망관련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상표가 상표등록인의 사망으로 취소될 경우 해당등록상표의 전용권은 상표등록인의 사망일자로 소멸된다.

제48조 등록상표가 취소되거나 본 조례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상표등록증> 원본은 폐기된다. 부분지정상품상의 상표등록이 취소되거나 상표등록인이 부분지정상품상의 상표등록을 취소할 경우 상표국은 <상표등록증> 원본에 주를 표기하여 재발급하거나 또는 <상표등록증>을 다시 발급하고 공고한다.

제7장 등록상표 전용권 보호

제49조 등록상표 중에 포함되어 있는 본 상품의 통용명칭, 도형, 사양 또는 직접 표시된 질량, 주원료, 기능, 용도, 중량, 수량 및 기타 특징 또는 지명에 대하여 등록상표 전용권자는 타인의 정당사용을 금지할 수 없다.

제50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법 제52조 제5항의 등록상표전용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1. 동일종류 또는 유사상품에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식

으로 상품명칭 또는 상품포장을 사용하여 대중에게 오해를 유발하는 행위.

2. 고의로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고저장, 운송, 우송, 은닉 등에 편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행위.

제51조 등록상표전용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누구라도 공상행정관리부문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

제52조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불법 경영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추징한다. 불법이익을 추산할 수 없는 경우 벌금액은 10만 위엔 이하로 한다.

제53조 상표 소유인은 타인이 해당지명상표로 기업의 명칭을 등기하여 대중을 기만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기업명칭등기주관기관에 해당기업의 명칭등기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기업명칭등기주관기관은 <기업명칭등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8장 부 칙

제54조 1993년 7월 1일까지 연속으로 사용된 서비스상표는 타인이 유사, 동일한 서비스에 이미 등록한 서비스상표와 유사, 동일하여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1993년 7월 1일 이후 3년 이상 상표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속 사용할 수 없다.

제55조 상표대리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무원의 별도규정에 준한다.

제56조 상표 등록용 상품과 서비스분류표는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가 제정 공포한다. 상표등록신청 및 기타 상표업무를 처리하는 문서양식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가 제정 공포한다.

상표평가심사위원회의 평가심의 규칙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제정 공포한다.

제57조 상표국은 <상표등록부>를 설치하여 등록상표 및 관련등록사항을 기재한다. 상표국은 <상표광고>를 편집, 인쇄, 발행하여, 등록상표 및 기타 관련사항을 게재한다.

제58조 상표등록을 신청하거나 기타 상표업무를 처리할 시, 비용을 납부한다. 납부비용의 항목과 표준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이 국무원 가격관리부문과 협의하여 규정 공포한다.

제59조 본 조례는 2002년 9월 15일부로 시행한다. 1983년 3월 10일 국무원 공표, 1988년 1월 3일 국무원 비준 제1차 수정, 1993년 7월 15일 국무원 비준 제2차 수정의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실시세칙>과 1995년 4월 23일 <국무원 상표등록부송문건 문제에 관한 회답>을 동시에 폐지한다.<끝>